제8절

국제협력 강화

출입국기획과 주무관 송지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제이주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이민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환경 변화와 흐름에 부응하여 난민, 국제테러, 불법이주 문제 등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OECD 이주정책 전문가회의, 제110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정부 간 이민정책 협의체 실무회의(IGC) 등에 참석하여 전 세계적인 이민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권보호에 노력하는 한편, ICAO의 여행자 신원확인 프로그램 지역 세미나(생체정보를 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승객정보 활용)에 참석하여 각국 운영사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제70차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및 제1차 글로벌난민포럼에 참석하여 전세계의 난민 동향 등을 파악하고 지원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였으며, 국제폭력 극단주의 대응 워킹그룹 세미나, 한·중 수사협의체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테러 발생을 막고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출입국 관련 현안이 있는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등 이민 당국과 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출입국 정책을 소개하는 이민정책포럼(Immigration Policy Forum), 주요국의 이민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하는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 직원 상호 교환연수, 정책연수 등 실무자간 인적 교류사업을 통하

여 해외 정책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제1항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 협력

급변하는 세계이민동향에 발맞춰 국제기구에서 이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동향 파악 및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19. 1월부터 12월까지 ① OECD 이주작업반 회의 ②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③ 유엔난민기구(UNHCR) 제70차 집행이사회 참가 회의 ④ IGC(국가간이민정책협의체) 워킹그룹 회의 ⑤ IGC 고위급 회의 ⑥ 제109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⑦ 발리프로세스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제2항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해외 이민당국과 실질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다발국가, 인력 송출국가 등 우리나라와 이주 관련 현안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이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이민당국 간 현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공식채널을 만드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이민청과 고위급 회담을 실시하였고, 몽골, 중국 등의 이민당국과 고위급 회의를 통하여 출입국 관리 분야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38 고위급 회담

<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회담 >

< 한·중 고위급 회담 >

2019. 11. 4. ~9.까지 국제기구 IOM과 아시아, 미주, 유럽지역 18개국의 미래이민정책결정자 25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를 통해 전 세계 이민국 직원들이 각국의 이민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민행정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위 회의에는 국제사회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 IOM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출입국관리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층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출입국관리 제도의 우수성 홍보, 각국의 주요현안 및 출입국정책 정보공유, 해외 이민당국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젊은 해외 이민국 우수인재들을 초청하여 친한 인사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20~30년 후 양자 간 이민협력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림 39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한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며, 국제적인 마인드를 지닐 수 있도록 정책연수 및 직원 교환연수를 연중 시행하였으며, 선진 이민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미국,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 19개 과정에 직원 54명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하여 양국 이민당국 실무자급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24 2019년 직원 국외 출장 현황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1	1.13.~1.19.	독일, 스위스	유럽지역 비자신청센터 설치 및 거점공관 운영회의	서울청 서기관 강성환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이민정보과 주사보 류우형 서울청 서기보 정미영
2	1.22.~1.25.	인도네시아	2019 발리프로세스	인천공항청 주사보 주진선
3	2.21.~3.1.	칠레	2019년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인천공항청 주사 박송배
4	2.24.~3.1.	인도네시아	제2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체류관리과 주사 박병건 서울청 주사보 조은경
5	3.13.~3.16.	중국, 홍콩	공익사업 투자이민 설명회	국적·통합정책단장 유복근 KOTRA 파견관 정금심 체류관리과 주사 박창두 인천공항청 주사보 최희선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6	3.17.~3.30.	홍콩	홍콩 실무자 교환연수	인천공항청 주사보 정민경 인천공항청 서기 권강이 인천공항청 서기 윤현정 전주사무소 서기 장지영 수원청 서기보 김현후
7	3.18.~3. 22.	스위스	정부간 이민정책 협의체(IGC) 실무자회의	이민조사과 주사보 송욱성
8	3.16.~3.23.	요르단	스마트 출입국심사 도입국가 선진사례연구 및 EXPO 참석	인천공항청 사무관 이문한 인천공항청 주사 권두현 인천공항청 주사보 김주현
9	3.24.~3.31.	영국, UAE	국제폭력 극단주의 대응 워킹그룹 세미나	부산청 주사 권오인 서울청 주사소 구지민
10	4.9.~4.11.	일본	제15차 한-중-일 FTA 협상	체류관리과 주사 박병건
11	5.11.~5.17.	미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율적 단속체계 연구	이민조사과 주사 장기연 인천청 주사보 이명호 인천공항청 서기보 강주연
12	5.12.~5.17.	말레이시아	2019년 재정착난민 수용대상자 면접심사	난민과 사무관 김종무 난민과 주사보 문아라 인천공항청 서기보 이상겸
13	5.13 ~5.18.	인도네시아	제22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참석	출입국정책단장 김영근 체류관리과장 이덕룡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승현 이민조사과 주사 남기득
14	5.27.~5.31.	스위스	정부간 이민정책 협의체(IGC) 실무자회의	체류관리과 사무관 용창식
15	6.3.~6.7.	폴란드	정부간 이민정책 협의체(IGC) 실무자회의	난민과 주사보 이태훈
16	6.9.~6.12.	미국	한·미 범죄예방협력(PCSC) 협정 이행 실무회의	이민정보과 사무관 윤철민 이민정보과 주사보 류우형
17	6.16.~6.19.	인도	한-인도(CEPA) 제8차 개선협상	체류관리과 주사 박병건
18	6.17.~6.21.	중국	공항 교환연수 참석	인천공항청 서기 정영환 인천공항청 서기보 이용엄 서울청 서기 안종혁
19	6.22.~6.27.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CEPA) 제9차 개선협상	체류관리과 주사 박병건
20	6.23 ~6.29.	홍콩	중견관리자급 상호교환 연수 프로그램	인천공항청 주사보 빈중찬 인천공항청 주사보 이서윤 인천공항청 서기 엄진희 서울남부사무소 주사보 이혜민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21	6.24.~6.29.	프랑스	제43차 OECD 이주작업반 회의	이민통합과장 김현채 외국인정책과 주사 김용국 난민과 사무관 오동록
22	6.24.~6.30.	캐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여행자 신원확인 심포지엄 TRIP	이민정보과 주사보 장승우 인천공항청 주사보 김주현 인천공항청 서기 이지수
23	6.29.~7.4.	호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26차 협상	체류관리과 주사 박병건
24	6.30.~7.5.	싱가포르	제12차 국장급 공무원 싱가포르 방문	국적·통합정책단장 유복근
25	6.30.~7.5.	스위스	2019년 재정착에 관한 연례 3자 협의회 참석	외국인지원센터장 이인숙 인천청 주사보 조태홍
26	7.3.~7.5.	몽골	재외공관 사증업무 현황 실태 점검	출입국심사과장 안동관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종철
27	7.6.~7.14.	우루과이	한-메르코수르 FTA 제3차 협상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28	7.7.~7.14.	미국	관계기관 합동 모의 재외선거 확인·점검	국적과 주사보 이은주
29	7.14.~7.16.	중국	한-중 이민당국 고위급회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출입국심사과 주사보 송방혁 체류관리과 중문에디터 김휘창
30	7.17.~7.20.	중국	한-중 수사협의체 실무회의 참석	서울청 서기관 윤상용 서울청 주사보 구지민
31	7.24.~7.26.	베트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 참석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영오 체류관리과 주사 유수열
32	8.6.~8.8.	싱가포르	싱가포르 협약 서명식 참석 및 회담	국적·통합정책단장 유복근
33	8.13.~8.21.	칠레	2019년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출입국심사과 주사보 김시화 인천공항청 주사보 이수연
34	8.19.~8.22.	몽골	한-몽골 고위급회담 참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출입국기획과장 이재유 출입국심사과장 안동관 체류관리과 주사 박정석 출입국기획과 주사보 공동원
35	8.24.~9.1.	독일, 네덜란드	차세대 전자여권 레이저발급기 도입을 위한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위한 출장	인천공항청 주사보 정태봉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36	9.1.~9.8.	네덜란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 연구	이민통합과 주사 김원희 서울청 서기 황난숙 인천공항청 서기 김선홍
37	9.20.~9.26.	베트남	제28차 RCEP 및 한-인니(CEPA) 양자협상	체류관리과 주사보 김지연
38	9.21 ~9.28.	캐나다	해외 복수국적제도 사례 연구	국적과 사무관 황민하 이민통합과 주사 강성진 국적과 주사보 서인수
39	9.22.~9.27.	말레이시아	2019년 2차 재정착난민 수용대상자 현지 면접심사	출입국지원센터 사무관 신양범 난민과 주사 이호철 난민과 주사보 문아라 난민과 주사보 허유정
40	9.25.~10.3.	캐나다	제40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인천공항청 주사보 김주현
41	10.5.~10.13.	스위스	제70차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난민과 주사 이호철 양주사무소 주사보 윤정용
42	10.6.~10.11.	인도네시아	제10차 한-인니 CEPA 협상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체류관리과 주사보 김지연
43	10.7.~10.11.	러시아	제12기 글로벌리더십과정 하반기 국외현장학습	외교부 국립외교원파견 부이사관 배상업
44	10.19.~10.27.	이탈리아	제100회 국제난민법 연수과정 참가	서울청 주사보 오종훈
45	10.20.~10.26.	카자흐스탄,	재정착난민 출국 전 사전교육 실시 및 출입국지원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정욱 체류관리과 주사 조기철 인천청 주사보 최효정
46	10.20.~10.27.	스위스	정부간 이민정책 협의체(IGC) 실무자회의	외국인정책과 주사 염기동 이민정보과 주사보 곽준석
47	10.27.~11.1.	아이슬란드	제26차 ICAO PKD 이사회	인천공항청 주사보 김현정 인천공항청 서기 이수혁
48	10.27.~11.2.	독일	외국인 간병인 양성방안 연구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고동중 외국인정책과 전문위원 정경진 인천공항청 서기 최부미
49	10.27.~11.3.	이탈리아	제101회 국제 난민법 연구	인천공항청 주사보 정미진
50	10.28.~11.2.	베트남	2019년 재외공관 사증지도점검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종철 체류관리과 주사보 유수열 수원청 주사보 유지열
51	11.1.~11.29.	필리핀	재외공관 사증업무 지원	인천공항청 주사보 문수영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52	11.10.~11.14.	싱가포르	불법취업 알선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사례 연구	이민조사과 주사 남명우 천안출장소 주사보 남재욱 양주사무소 주사보 김태완
53	11.11.~11.15.	대만	결혼이민제도 연구	이민통합과 사무관 권택성 이민통합과 주사 최연준 세종로출장소 서기 최영란
54	11.13.~11.15.	중국	재외공관 사증지도점검	출입국심사과장 안동관 난민과 사무관 전동균 체류관리과 주사 박병건 체류관리과 주사보 송지훈
55	11.13.~11.16.	일본	인구 변화 대응 정책연구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56	11.14.~11.22.	스위스,	중국공익사업 투자이민 설명회 개최	양주사무소 서기 정승호
57	11.17.~11.23.	캐나다	셀프키오스크를 활용한 입국심사 간소화 방안 연구	이민정보과 주사 김유신 인천공항청 주사보 백원길 인천공항청 서기 배세경 인천공항청 서기 이보경
58	11.18.~11.23.	말레이시아	육로국경관리체계 연구	출입국심사과 주사 노종인 서울청 주사보 김현철 인천청 서기 전경민
59	11.24.~11.30.	스위스	제110차 국제이주기구 IOM 총회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이은경 출입국기획과 주사보 송지연
60	11.24.~11.30.	호주	이민부처 정보분석과정 연수	인천공항청 주사보 양근민 인천공항청 서기 김태연
61	11.26.~11.29.	중국	해외이민조직 사례 연구	출입국심사과 주사 이승태 인천공항청 주사보 김용만 제추청 서기 양지선
62	11.30.~12.8.	덴마크	이민국 난민심판원 연수	외국인지원센터장 이인숙 난민과 사무관 홍인표 화성외국인보호소 서기 송한나
63	12.1.~12.7.	베트남	해외 민간 한국어 교육기관 점검	이민통합과 사무관 유성오 이민통합과 주사 강성진 출입국기획과 주사보 김형찬
64	12.2.~12.6.	미국	ONE-ID 도입을 위한 선진 공항 견학	인천공항청 서기관 박재완 인천공항청 주사 이미경 인천공항청 서기 최혜련
65	12.7.~12.12.	스위스	IGC 총회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이정미 인천공항청 주사보 이미연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66	12.8.~12.11.	말레이시아	2019년 제2차 수용대상자 국내 입국 지원	난민과장 김정도 난민과 주사보 문아라 난민과 주사보 오주현
67	12.8.~12.14.	러시아	해외 국적제도 및 사례연구	전주사무소 사무관 유심희 국적과 주사보 박준혁 인천공항청 서기 김주현
68	12.9.~12.13.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계획에 따른 정보수집	인천공항청 주사 임동영 출입국기획과 주사 김관영 출입국심사과 주사 김주현
69	12.9.~12.15.	이탈리아	국제난민법 연수	난민과 전문위원 엄민아
70	12.14.~12.20.	스위스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	난민과 주사 조신 난민과 주사보 공동원
71	12.26.~1.1.	독일, 스위스	유럽지역사증거점공관 운영 준비점검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체류관리과 주사 김택균 서울청 서기보 유근욱

표 25 2019년 외국기관의 주요 인사 방문 현황

연번	일자	국가	방문 목	예방자
1	1. 20.	네덜란드	다양한 출입국관련 사례 정보 교환	주중 베이징대사관 주재관 미쉘
2	2. 11.	스페인	한국의 이민정책 및 국경관리 현황 사례 공유 등	미주개발은행 총재특별자문관 안토니 등 3명
3	2. 21.	몽골	신임영사 부임 인사 및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의	주한 부산몽골대사관 영사 바자르자브
4	3. 14.	요르단	요르단인의 한국비자 신청 및 난민관련 업무협의	주한 요르단대사관 대사 아델 등 2명
5	3. 20.	몽골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 감소 관련 협의 등	주중 몽골대사관 대리대사 남스라이 등 3명
6	3. 21.	독일	영사 귀임인사 및 후임자 소개	주한 독일대사관 영사 톨스텐 등 3명
7	4. 2.	러시아	러시아 단기연수 협조 요청 및 관련 정보 파악 등	주한 러시아대사관 영사 블라디미르 등 1명
8	4. 11.	일본	승격된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대한 정보	주한 일본대사관 시라토리영사 등 2명
9	4. 24.	필리핀	출입국 관련 양자관계 협의 및 한국 내 필리핀인 불법체류 현황 파악	필리핀외교부 이주국장 아리올라 등 7명

연번	일자	국가	방문 목	예방자
10	5. 8.	몽골	한국 국무총리-몽골 총리 배석한 공식 회담 시 논의된 의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 사안 검토	몽골외교부 영사국장 뭉크투시그
11	5. 21.	일본	일본의 사전등록제 소개	주한 일본대사관 시라토리영사 등 2명
12	8. 2.	일본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주한 일본대사관 시라토리영사 등 2명
13	8. 28.	우크라이나	한-우크라이나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요청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영사 데니스
14	9. 6.	일본	한-일본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추진 계획 등 논의	주한 일본대사관 시라토리영사 등 2명
15	9. 16.	카자흐스탄	불법체류 문제 해결 및 출입국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위한 논의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영사 웁벳바예프 등 3명
16	9. 23.	캐나다	국외단기연수 협조요청 및 진행 위한 정보 교류	주일 캐나다대사관 주재관 코리 등 3명
17	9. 25.	일본	강제송환 절차에 관한 정보 교류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 시라토리 등 2명
18	9. 27.	카자흐스탄	뺑소니범 신병 인도 관련 협의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대사 듀센바예프 등 4명
19	10. 23.	우크라이나	사증면제협정체결 요구에 따른 논의	우크라이나 이민청장 막심 등 4명
20	11. 6.	일본	재한 일본인 보호를 위한 정부간 협조 방식 등 논의	일본 외무성 영사국장 미즈시마 등 7명
21	12. 23	일본	한-일본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추진관련 논의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 시라토리 등 2명

CHAPTER 3

일자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9 Annual Report

제1절 상반기

제2절 하반기

제1절 상반기

1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 1.	■ 크루즈 개별관광객 관광상륙허가 제3차 시범사업 시행 • 내용 : 중국 전담여행사 또는 크루즈 선사가 직접 모객한 중국인이 법무부장관 지정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경우 관광상륙허가(비자 없이 입국) 허용	출입국 심사과
1. 1.	■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 • 내용 : 재외공관 지정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인도네시아 · 베트남 · 필리핀)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 허용(중국인 관광객 편중 개선 노력) ※ 시행기간 : 1. 1. ~ 12. 31.	출입국 심사과
1. 1.	■ 「결혼동거목적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시행 •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144호) '19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기준 개정 ※ 2인 가구 기준 : '18년 17,082,582원 → '19년 17,439,168원 (2.1% ↑)	이 민 통합과
1. 4.	■ 제175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이민정책 방향	외국인 정책과
1. 9.	■ 제176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고용부담금 제도 및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외국인 정책과
1. 15.	■ 제3차 한-중 FTA 후속협상 참석 • 한-중 인적교류 및 협력 메커니즘 강화 등 한-중 FTA 서비스 양허 수준 확대방안 논의	체 류 관리과
1. 16.	■ 제177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한국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외국인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 17.	■ 2019년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방안 시달 • 전국 36개 권역별 특별단속지역 지정, 각 관서별 특별단속지역 단속·순찰 자체 시행계획 수립 등	이 민 조사과
1. 21.	■ 제1회 국적증서수여식 개최 • 일시, 장소 : 1. 21.(월) 15:00, 국립한글박물관 • 참석 : 장관, 외국인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서울청장, 서울시장, 국회법사위원, BH(민정수석실 행정관) • 내용 : 개정 국적법('18. 12. 20.) 시행으로 도입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에 따라 실시한 첫 번째 국적증서수여식	국적과
1. 23.	■ '19년도 범죄예방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관리 방안 시달 •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67개소), 외국인 밀집지역 담당관제 지정·운영 등	이 민 조사과
1. 23.	■ 제17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아랍 난민들 및 아랍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안	외국인 정책과
1. 24.	■ 설 연휴 기간 중 출입국심사 철저 지시 • 내용 : 해외여행객 급증 예상에 따른 출입국심사장 혼잡 완화 대책 마련, 여행객 가장 불법입국 기도자에 대한 심사 강화, 위변조 적발 철저 등	출입국 심사과
1. 25.	■ '19년 제1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일시, 장소 : 1. 25.(금), 09:00~17: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회의실 • 참석 : 전국 난민전담공무원 등 40여명 • 내용 : 난민이론(박해),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면접기법 및 사례연구(강제결혼, 가정폭력) 등	난민과
1. 29.	■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법무부장관) • 내용 : '19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 예멘 난민 심사경과 및 테러위험인물 심사강화 계획 등 보고	출입국 심사과
1. 30.	■ 주한태국대사관 만찬간담회 참석 • 주요내용 - 태국 관련 국내 현안 논의, 태국 주재 이민연락관 파견 증원 요청 등	출입국 기획과
1. 30.	■ 제179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캐나다 이민자 대상 출국 전 프로그램	외국인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 30.	■ UNHCR 부대표, 차관님 예방 • 일시, 장소 : 1. 30.(수) 14:00~15:00, 차관 접견실 • 참석 - (UNHCR 측) 부대표, 아태지역국장 등 5명 - (우리측) 차관님, 외국인본부장 등 5명 • 내용 : 난민 현안 관련 의견 교류	난민과
1. 31.	■ 2019년 제1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1. 31.(목) 15:00~18: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과

2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2. 11.	■ 미주개발은행(IDB) 특별 자문관, 외국인본부 방문 • 배경 : 미주개발은행에서 이주문제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하여 국내 비자제도·난민정책 등 브리핑 요청	출입국기획과
2. 11. ~ 12.	■ 선원 상륙허가제도 등 업무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내용 : 선원 상륙허가 제도 등 선박업무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출입국심사과
2. 12.	■ '19년 제1차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 • 일시, 장소 : 2. 12.(화) 15:00,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 참석 : 난민과장(주재), 관계부처 공무원, 국제기구, NGO 등 20여명 • 안건 : 1~3기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 현황 및 4기 재정착 난민 지역사회 정착준비 진행상황 등 논의	난민과
2.13.	■ 법무부-경찰청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2. 18.~3. 15.(4주) 광역단속팀 설치 출입국·외국인 관서 주관으로 합동단속반 편성, 주당 2회 경찰과 합동단속 실시	이 민 조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2. 13.	■ 제180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	외국인정책과
2. 19.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위원회(법무부차관) • 내용 : 대회 참가자 등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출입국 안전 활동 등	출입국심사과
2. 20.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참석 • 성과사업 추진현황, 정상회의 부대행사를 위한 예산 소요 등 정상회의 준비사항 점검	체 류 관리과
2. 20.	■ 제181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외국인정책과
2. 22.	■ 안산 고려인 마을 현장 방문 • 고려인 마을 · 어린이집 현장 방문, 고려인 문화센터 견학 및 단체관계자 간담회 개최 • 참석 : 외국인본부장, 체류관리과장 및 안산신청 관계자 등	체 류 관리과
2. 27.	■ 한미 비자면제협정 10주년 기념 행사 참석 참석 : 외국인본부장, 출입국심사과장 등 4명 참석	출입국기획과
2. 27.	■ 제182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불법체류 관리방안으로서의 합법화와 귀환지원	외국인정책과
2. 27.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일시, 장소 : 2. 27.(수) 10:30~11:3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장관, 외국인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서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장,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 등 • 대상자 :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손자 등 39명 • 내용 :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영상(독립유공자 공적 소개 포함),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후손 소감 발표 등	국적과
2. 28.	■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식 개최 • 일시, 장소 : 2. 28.(목) 15:00~16:30, 외국인본부 회의실 • 대상자 :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등 총 13명 • 내용 : 위촉장 수여 및 소양교육	국적과

3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 2.	■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사항 홍보 • 내용 :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국적선택, 이탈, 상실, 보유)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보도자료배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 홍보	국적과
3. 4.	■ 외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대상 확대 시행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도 기업 인센티브 관광객, 인도 고등학교 이하 수학여행단(5인이상)을 대상으로 단체비자(C-3-2, 15일) 발급 개시	체 류 관리과
3. 5.	■ 다국어 인사말 소속기관 배포 • 출입국심사 시 심사관이 외국인 승객에게 해당 나라의 언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19개 언어) 인사말 모음집 제작 · 배포	출입국 심사과
3. 5.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재한외국인 독립기념관 체험학습과정 운영 • 기간, 장소 : 3. 5.(화)~29.(금) 총 15회, 독립기념관(천안) • 참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외국인 유학생,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등 • 내용 : 3·1운동 전시관 관람, 우리나라 역사교육, 도자기 체험 등	이 민 통합과
3. 6.	■ 제183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건설업 일자리 정상화 방안	외국인 정책과
3. 6.	■ '19년 제2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일시, 장소 : 3. 6.(수), 09:00~17:00,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 참석 : 전국 난민전담공무원 등 40여명 • 내용 : 난민이론개관(난민인정기준, 구조적 분석법), 국가정황정보 수집, 해외사례분석, 최근 쟁점사례 등 교육	난민과
3. 7.	■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개최 • 농어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지자체별 인원 배정 심의	체 류 관리과
3. 11.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사진·동영상 공모전 실시 • 공모명 : 「당신의 대한민국을 보여주세요」 • 공모부문 : 사진, 수기, 동영상 등 3개 부문 • 내용 : 내·외국인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담, 사진 및 관련 주제 UCC 동영상 공모	이 민 통합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13.	■ '19년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안) 시달 • '19. 3. 18.~4. 12.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	이 민 조사과
3. 14.	■ 무사증 입국허가 통합지침 개정 시달 •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무사증 입국허가(체류자격 B-2-3), 중국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행정처분 기준 개정 등	출입국 심사과
3. 15.	■ 제184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대한민국의 기원	외국인 정책과
3. 17. ~ 3. 30.	■ 한-홍콩 실무자급 교환연수 실시 • 주요내용 - 외국인 출입국심사 시 승객사전분석 및 안면인식 활용 여부, 불법입국시도자 등에 대한 송환절차, 육로를 통한 출입경심사 등	출입국 기획과
3. 20.	■ 제185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이슬람의 진실과 오해	외국인 정책과
3. 22.	■ 2019년 제2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3. 22.(금) 14:00~18: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1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과
3. 25.	■ 국가정보 자문위원단 회의 개최 • 일시, 장소 : 3. 25.(월) 11:00~12:00, 검찰국 회의실 • 참석 : 외국인본부장(위원장), 내·외부위원 등 18명 • 안건 : 자문위원단 위촉장 수여 및 난민업무 현황 등 공유	난민과
3. 26.	■ 2019년 4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4. 1.~4. 26.(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실시	이 민 조사과
3. 28.	■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안건 : ①영주(F-5) 자격자의 국내 의무 거주요건 설정 검토 ②결혼이민자의 본국 자격증을 활용한 취업능력 연계 ③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국민 역차별 문제 검토 등 • 참석 : 위원장(정인섭 교수), 본부장(내부위원), 자문위원 등	외국인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 29.	■ 재외동포법 시행 제20주년 기념 중국동포 정책 세미나 참석 • 일시, 장소 : 3. 29.(금) 프레스센터(19층) • 재외동포법 시행 20년 평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인적개발의 과제 발표 및 토론	체 류 관리과
3. 29.	■ 해외법률 DB 사용교육 세미나 개최 • 목적 : 법무부 직원들의 해외 법제사례 연구 및 리서치 역량 강화와 주요 법적 사안의 검토, 연구, 대응 등 업무수행 능력 증진 • 내용 : 해외 법률 데이터를 관할하는 국내 기관 담당자를 초청하여 법률 DB 사용 실무 교육 실시	외국인 정책과
3. 29.	■ '19년 제1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3. 29.(금) 15:00~18:00, 외국인본부 회의실 • 참석 : 외국인본부장(위원),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10명 • 안건 : 우수인재 5명 인정여부 심의(과학3, 첨단1, 경영1)	국적과

4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 2.	■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 • 일시, 장소: 4. 2.(화), 경원재 앰버서더 호텔 • 안건 : 방한관광 혁신 전략, 관련 사례 발표 및 활성화 대책 논의	체 류 관리과
4. 3.	■ 제1회 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 일시, 장소: 4. 3.(수), 법무부 외국인본부회의실 • 외국인 정책 개발 · 협업에 대한 정책 토론 및 양 기관 협력과제 검토	체 류 관리과
4. 8.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 '19. 4. 9.부로 강원도 산불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이귀화나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	국적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 9.	■ 한-중-일 FTA 제15차 협상 참석 • 일시, 장소 : 4. 9.(화)~11(목), 일본 도쿄 • FTA 기업인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 등 논의	체 류 관리과
4. 10.	■ 제186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고용허가제(귀국지원) 소통의 장	외국인 정책과
4. 15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일부개정 • 내용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후보자 추천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규정 마련 및 관련 서식 추가	이 민 통합과
4. 17.	■ 제187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새로운 협력	외국인 정책과
4. 22.	■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 시행 일자 : 4. 22.(월) • 내용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 시행에 따라 독립유공자, 우수인재 등으로 특별귀화한 경우 국적증서에 그 사실 기재 - 사할린동포 1세 자녀에 대해 종합평가 면제 - 사할린동포의 만 60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면접면제 등	국적과
4. 24.	■ 필리핀 이주국 국장 방문 • 주요내용 - 필리핀 재외국민 보호 및 한-필리핀 출입국관련 협력관계 논의 등	출입국 기획과
4. 24.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관계부처 회의 내용 : 불법휴대 축산물 반입 관련 과태료 미납자 출입국 제한방안 논의 등	출입국 심사과
4. 24.	■ 제18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이주민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외국인 정책과
4. 26.	■ 제3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일시, 장소 : 4. 26.(금), 09:00~17:00, UNHCR 한국대표부 회의실 • 참석 : 전국 난민전담공무원 등 30여명 • 내용 : 면접 기법 연구(종교, 특정집단), 난민이론 연구, 신빙성/신뢰성 심사, 사례 분석, 역할극 및 소그룹 토론	난민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 29.	■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에 대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지침」 개정(안) 시행 • 시행일자 : 4. 29.(월) • 내용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연령 하향(19세→14세),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에 관한 예외 인정, 국적신청 후 해외 장기 거주자에 대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등	국적과
4. 30.	■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 MOU 체결 • 내용 :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인공지능(AI) 기술력 향상 추진	외국인정책과

5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5. 1.	■ 비전문취업(E-9) 근로자 체류민원 신청 관할구역 완화 시행 비전문취업(E-9) 근로자가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민원신청 시 체류지 또는 근무처 관할 기준 외에 고용센터에서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 가능하도록 관할 적용 완화	체 류 관리과
5. 1.	■ 국적신청접수 관련 외교부(재외공관)와 전산 연계 시행 • 내용 : 외교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외교부에서 전송한 국적관련 5개(국적이탈, 선택, 상실, 취득, 보유)신고를 직접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국적과
5. 1.	■ 법무연수원, 상반기 이민정책 이해과정 운영 • 일시, 장소 : 5. 1.(수)~3.(금),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 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35명 • 내용 : 이민정책의 이해, 해외 이주동향 등	이 민 통합과
5. 3.	■ 제189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미래(전망과 대응방안)	외국인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5. 7.	■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검토 • 내용 : 위험 외국인의 입국은 차단하면서,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에게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편의를 제공하는 사전여행허가제* 도입 방안 검토 ※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사전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출입국 심사과
5. 8.	■ 한-몽골 영사국장회의 참석 • 일시, 장소 : 5. 8.(수), 외교부 • 안건 :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몽골 체류 국민 애로사항 개선 등 논의	체 류 관리과
5. 14.	■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 집중단속 실시(안) 시달 • '19. 3. 18.~4. 12.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	이 민 조사과
5. 15.	■ 제190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정책과
5. 15.	■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개정 • 내용 : 비자 재신청자 사증발급 등 신청 시 소득요건, 한국어 구사요건 입증 서류, 결혼배경 진술서 등 제출 면제(배우자는 동일하나 비자가 만료된 경우)	이 민 통합과
5. 17.	■ 2019년 제3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5. 17.(금) 14:00~18: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5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과
5. 20.	■ 제12주년「세계인의 날」기념식 개최 • 일시, 장소 : 5. 20.(월) 14:30, 더케이아트홀 • 참석 : 장관님, 국회의원 정성호, 주한외교사절, 내·외국인 등 900여 명 • 내용 : 기념사 및 귀빈 축사, 정부포상 등 기념식, 축하공연 등	이 민 통합과
5. 21.	■ 2019년 6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6. 3.~6. 28.(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실시	이 민 조사과
5. 24.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주간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체류외국인 240만명 시대,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방향 모색(부제 : 반외국인 정서, 그 원인과 대책은?)	외국인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5. 26.	■ 한-홍콩 중견자급 교환연수 실시 • 주요내용 - 인천공항청, 지원센터, IOM 이민정책연구원 등 기관방문 및 한-홍콩 출입국관리 세미나 개최	출입국 기획과
5. 27.	■ 중국 9개 대도시 호구소지자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시행 •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쑤저우·샤먼 등 9개 대도시 호구소지자를 복수비자 발급 대상으로 확대	체 류 관리과

6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3.	■ SOFA 출입국분과위원회 개최 • 내용 : 평택기지 내 주기적인 출입국업무 지원 및 SOFA 관련 각종 현안 논의	출입국 심사과
6. 3.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현장 방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괴산군청 관계자 등이 충북 괴산군 옥수수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작업장, 숙소 등 현장 점검 및 지자체 애로사항 청취	체 류 관리과
6. 4.	■ 거제·통영지역 외국인고용기업 대표자 간담회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체류관리과장 등이 거제·통역지역을 방문, 조선용접공 및 어선원 고용 관련 업체 건의사항 청취	체 류 관리과
6. 5.	■ '19년 제4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일시, 장소 : 6. 5.(수) 09:00~16:00, 광주사무소 중회의실 • 참석 : 부산, 제주, 대구, 광주, 여수 난민담당자 10여명 • 내용 : 면접 및 보고서 작성, 판례를 통한 난민심사 기준 등	난민과
6. 12.	■ 2분기 유흥업소 · 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등 합동단속 계획(안) 시달 • '19. 6. 17.~7. 12.(4주), 유흥·마사지업종의 불법취업 외국인 및 고용주와 불법입국 및 고용 알선브로커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이 민 조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14.	■ '19년 출입국항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일시, 장소 : 6. 14.(금) 10:00~16:00, 인천공항청 보안관리과 • 참석 : 출입국항 난민담당자 10여명 • 내용 : 회부심사의 절차 및 면담 및 보고서 작성, 출입국항 난민심사 및 소송의 이해	난민과
6. 17.	■ 국내체류 동포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주제 :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과 국민통합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도모하고, 국내체류 동포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외국인 정책과
6. 18.	■ 한-인도네시아 출입국 고위급 회담 개최 • 주요내용 - 양국 국민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인니 일반여권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국내 인니인 불법체류 방지 방안, 관련 정보교류 등	출입국 기획과
6. 18.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포럼 개최 • 일시, 장소 : 6. 19.(수) 13:30~18:00, 강원대학교 • 주최/주관 : 법무부(주최), 강원대 난민연구센터·IOM 이민정책연구원(주관) • 주제 : 이주의 시대, 난민에 대한 새로운 정책접근과 사회적 성찰	난민과
6. 20.	■ 제191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대한민국의 적정 이민도입규모	외국인 정책과
6. 21.	■ 국적증서수여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기간 : 2019. 6월~12월 / 6개월간 • 대상 : 전국 17개 청(사무소) 주관 국적증서수여식 참석자 • 내용 : 행사 만족도, 국적취득 이후 알고싶은 정보 등	국적과
6. 26.	■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도입 · 시행 •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단체전자비자 제도'를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으로 확대	체 류 관리과
6. 26.	■ 제192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외국 국적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관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외국인 정책과
6. 28.	■ '19년 제2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6. 28.(금) 15:00~18:00, 외국인본부 회의실 • 참석 : 외국인본부장(위원),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9명 • 안건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한 7명에 대한 심의·의결	국적과

제2절 하반기

7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7. 3.	■ 제193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인권지향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	외국인정책과
7. 5.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자유치 성과' 보도자료 배포 • '13. 5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19. 6월까지 누적 외자 유치액은 1,706억원이며, '17. 1월부터 투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등에 저리로 대출 지원	체 류 관리과
7. 6.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 특강 실시 • 기간, 장소 : 7. 6.(토)~21.(일), 서울·인천지역 대학(총 4회) • 내용 : 체류유형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등 우수이민자가 멘토가 되어, 강의 및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	이 민 통합과
7. 8.	■ 제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법무부장관) • 내용 : '19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방향 등 심의	출입국 심사과
7. 10.	■ 외국인 관광객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시행 • 내용 :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단기체류 외국인이 주요 공·항만*으로 출국 시,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 이용 허용 ※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및 부산항	출입국 심사과
7. 15.	■ '19년 제5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일시, 장소 : 7. 15.(월) 09:00~18:00, UNHCR 한국대표부 회의실 • 참석 : 난민심사 거점기관 난민담당자 20여명 • 내용 : 난민이론 연구(대안적 피신), 전문가 초청 강연, 난민전문통역인 활용방안, 사례분석 및 소그룹 토론 등	난민과
7. 16.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참석 • 신남방국가 비자제도 개선방안 및 경제활성화 등 추진과제 점검	체 류 관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7. 18.	■ 라이베리아 사증면제협정 적용 일시 정지 • 내용 :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한 불법입국, 범죄 등 방지를 위해 라이베리아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적용을 일시 정지	출입국 심사과
7. 19.	■ 법무부 차관 정책현장 방문 • 일시, 장소 : 7. 19.(금), 구로구민회관 • 내용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국적증서 수여자 간담회 참석 등	국적과
7. 19.	■ '19년 제4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7. 19.(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2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과
7. 20.	■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회통합교육 및 평가현장 방문 • 일시, 장소 : 7. 20.(토) 13:00, 서울 숭실대학교 • 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현장, 주말반 수업, '멘토와의 대화' 특강 참관 및 관계자 격려 등	이 민 통합과
7. 22.	■ '19년 8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8. 5.~ 8. 30.(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단속 실시	이 민 조사과
7. 22.	■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간 업무협약 체결 • 일시, 장소 : 7. 22.(월) 10:3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체결권자) : 법무부차관, 구로구청장(의장) • 내용 : 법무부-지자체 간 외국인정책 공유 및 상호협력 강화 등	이 민 통합과
7. 22.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 내용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근거 등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기간 : '19. 7. 22.~8. 30.(40일)	난민과
7. 24.	■ 제194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글로벌 및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국의 외교전략	외국인 정책과
7. 30.	■ 주한 태국대사 면담 • 주요내용 -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 감소를 위한 신속한 MOU 체결 촉구 및 양국 간 출입국 협력 방안 모색 등	출입국 기획과

8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8. 1.	■ ‘건강보험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전국 확대 시행 • 7. 2.,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실시한 ‘건강보험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 제한’을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로 확대 시행	체 류 관리과
8. 2.	■ 외국인본부장, 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관 권기창대사 면담 • 주요내용 - (권기창 대사) 우크라이나 정부는 일반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적극 희망 - (본부장) 사증면제협정 체결 시 불법체류자 증가 등 우려에 따라 신중 검토 필요	출입국 기획과
8. 6.	■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안건 : ① 난민의 사회통합 및 정착지원 강화 방안 ② 외국인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내용 및 한계 ③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 등 • 참석 : 위원장(정인섭 교수), 본부장(내부위원), 자문위원 등	외국인 정책과
8. 7.	■ 제195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내가 경험한 난민 2019	외국인 정책과
8. 13.	■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관련 항공사 간담회 개최 • 내용 : 인천공항 취항 국제선 운항 항공사(외국적항공사 포함) 관계자를 대상으로 ETA 도입방향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출입국 심사과
8. 14.	■ 제5차 외국인 유학생 인증위원회 참석 • ’20~’23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기준 및 심사절차,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계획 등 협의	체 류 관리과
8. 14.	■ 제196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육로개방시대의 국경관리에 관한 기초연구	외국인 정책과
8. 19. ~ 8. 23.	■ 외국인본부장, 한-몽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참석 등 국외 출장 • 주요내용 - 한-몽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참석, 주몽골대사관 비자심사 적체(3~4개월)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진단 및 몽골 당국과의 업무 협의 등	출입국 기획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8. 19	■ 불법체류 감축 관련, 태국 경찰청과 간담회 개최 • 주요내용 -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수에 대한 심각성 인지, 태국 경찰단과 우리 조사과간 핫라인 구축 희망 및 관련 협조체제 강화 방안 논의	출입국 기획과
8. 21.	■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관련, 우리 부 대책안 발표 • 내용 : 결혼이민자 등 사증·체류·국적제도, 조기적응 및 피해예방 교육 등 개선방안 보도자료 배포	이 민 통합과
8. 26 ~ 9. 6.	■ 신규채용 난민전문임기제공무원 등 난민실무 교육 실시 • 기간, 장소 : 8. 26.(월)~9. 6.(금), 출입국지원센터 • 대상 : 신규채용 난민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전국 난민전담공무원 등 총 25명 • 내용 : 난민업무 전반에 대한 기초 업무 지식 함양, 난민심사 전문성 향상 등	난민과
8. 27.	■ 신임 UNHCR 한국대표부 대표 면담 • 일시, 장소 : 8. 27.(화) 14:00, 외국인본부장 회의실 • 참석 : - (UNHCR 측) James Lynch 한국대표, 법무관 등 - (우리측) 외국인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난민과장 등 • 내용 : 신임 대표 부임인사 및 난민 제도 개선 관련 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	난민과
8. 28.	■ 불법·유흥 마사지 업소 집중단속 계획 시달 • '19. 9월(1개월) 불법 유흥·마사지업소 집중단속 실시(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불법행위, 마사지업소 등 신종 유흥업소의 미풍양속 저해행위 등)	이 민 조사과
8.28.	■ 법무부-이민정책연구원 워크숍 개최 • 주제 : 법무부 및 이민정책연구원 간 「실무-정책연구 교류」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주요 현안 공유	외국인 정책과
8. 30.	■ '19년 하반기 국외연수 추진 • 주요내용 - 상반기 선발과정 중 1개 과정 연수국가 변경 추진 및 신규 9개 과정 추가 편성	출입국 기획과

9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2.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개정 시행 • 재외동포(F-4) 체류자격변경·연장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시행	체 류 관리과
9. 3.	■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관련 여행사 간담회 개최 • 내용 : 여행협회 및 여행사 관계자 등 대상으로 ETA 도입방향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출입국 심사과
9. 3.	■ 계절근로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농 · 어업 분야에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 5개월까지 취업 가능한 가칭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체 류 관리과
9. 4.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과태료 체납 확인 시행 •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집행 실효성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과태료 체납정보를 받아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 제한	체 류 관리과
9. 4.	■ 제19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다문화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외국인 정책과
9. 9.	■ '20년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방안 관계부처 회의 참석 • 주요내용 - 고위급 상호 방문을 대비하여 사전 성과사업 발굴 논의 등	출입국 기획과
9. 16.	■ 카자흐스탄 영사국장 면담 • 주요내용 - 사증면제협정 체결 이후 카자흐스탄인의 불법체류 증가, 입국불허 증가 등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 등	출입국 기획과
9. 16.	■ UNHCR 국제보호국장 면담 • 일시, 장소 : 9. 16.(월) 15:00, 외국인본부 중회의실 • 참석 : - (UNHCR) Grainne O'Hara 국제보호국장 등 5명 - (우리측) 외국인본부장, 국적·통합단장, 난민과장 등 5명 • 내용 : 난민관련 주요 현안 논의 및 의견 교환	난민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17.	■ 상반기 우수 출장보고서 동영상 제작 및 공유 • 배경 - 국외 출장 결과의 공유를 통한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해출장 결과 요약한 동영상 제작 및 공유	출입국 기획과
9. 18.	■ '19년 하반기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정기위촉 • 내용 : 신규위원 추천자 4명, 재추천(연임) 5명 등 9명 위촉	이 민 통합과
9. 18.	■ 제199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외국인력정책 과거, 현재와 미래	외국인 정책과
9. 26.	■ '19년 제3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9. 26.(목) 15:00~18:00, 외국인본부 회의실 • 참석 : 외국인본부장(위원),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11명 • 안건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한 8명에 대한 심의·의결	국적과
9. 27.	■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면담 • 주요내용 - 뺑소니 도주혐의 카자흐스탄인 관련 업무협조 요청	출입국 기획과
9. 27.	■ '19년 하반기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일시, 장소 : 9. 27.(금) 09:30~17:00, KTX 대전역 회의실 • 참석 : 국적·통합정책단장, 국적과장 등 6명, 비수도권 관서 소속 민간면접관 18명 • 내용 : 인권·성인지 간수성, 귀화제도 이해 및 면접심사 실무, 베트남 문화의 이해 등	국적과
9. 30.	■ 2019년 10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10. 7. ~ 11. 1.(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실시	이 민 조사과

10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0. 1.	■ '19년도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 개최 • 일시, 장소 : 10. 27.(일) 09:00,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 주최 : 서울외국인청, (사)건강사회운동본부 공동 • 참여 : 내국인 및 재한외국인 약 3,000명 • 내용 : 둘레길 걷기, 정부합동고충상담, 건강캠프 등	이 민 통합과
10. 2.	■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안건 : ①불법체류자 감축 종합 대책 ②탄력적 체류허가 심사기준 도입 방안 ③약혼비자 도입 방안 등 • 참석 : 위원장(정인섭 교수), 본부장(내부위원), 자문위원 등	외국인 정책과
10. 5.	■ '19년 제5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10. 11.(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3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과
10. 7.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시행 알림 • 10. 21.(월)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출국일 기준 3일 전(공휴일 제외)~15일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 • 체류지 관서에서는 '19. 10. 14.(월)부터 접수	이 민 조사과
10. 17.	■ 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면담 • 배경 - 우리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설계와 관련하여 면담	출입국 기획과
10. 18.	■ '19년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심사위원회 개최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및 우수 의료관광 유치기관 관리 ·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등 논의	체 류 관리과
10. 23.	■ 제200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귀곡자 교양강의	외국인 정책과
10. 24. ~ 25.	■ 2019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발표회 개최 • 내용 : 공·항만 현안사항 의견개진 및 토론, 심사 사례·기법 공유 및 정책 개선방안 토의 등	출입국 심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0. 28.	■ 우크라이나 이민청장 방문 • 주요내용 - 사증면제협정 체결 요청에 따른 우리측 입장 표명 및 양국 출입국현안 논의	출입국 기획과
10. 28. ~ 11. 1.	■ 중국 공항만 상호연수단 방한 • 방문기관 : 인천공항청, 서울청, 인천청, 지원센터 등	출입국 기획과
10. 28.	■ 11월 불법·유흥 마사지 업소 집중단속 계획 시달 • '19. 11월(1개월) 불법 유흥·마사지업소 집중단속 실시(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불법행위, 마사지업소 등 신종 유흥업소의 미풍양속 저해행위 등)	이 민 조사과
10. 29.	■ '19 국적제도 개선 자문 TF 회의 개최 • 일시, 장소 : 10. 29.(화) 09:30~13:30, 외국인본부 회의실 • 참석 : 외부위원 8명, 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국적과장, 담당사무관 • 안건 :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연구용역) 관련 보완점 토론 및 향후 개최 예정인 토론회 주제 선정	국적과
10. 30.	■ 제201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대만의 결혼이민자 체류관리제도	외국인 정책과
10. 31.	■ 한국무역협회 규제개선 간담회 참석 • 지방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등 협회 · 단체 건의과제 사전 검토 및 애로사항 청취	체 류 관리과

11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4. ~ 11. 9.	■ 제12회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 회의(FILC) 개최 • 주제 - 국경관리의 새로운 방식, 난민과 사회통합 ※ 부대행사 : 이민정책 포럼 및 주한공관원 만남의 날(11. 6.)	출입국 기획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6.	■ 제202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현장에서 만난 이민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민자	외국인정책과
11. 7.	■ 전국 체류·사증 담당자 워크숍 개최 • 11. 7.(목)~8(금) 이틀 간 본부 및 전국 소속기관 체류 · 사증업무 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하여 체류 사증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	체 류 관리과
11. 8.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개최 • 기간, 장소 : 11. 8(금), 법무부 108호실(서울지방중기청 회의실) • 참석 : 국적 · 통합정책단장, 심사위원, 발표자 등 • 내용 : 정책과제 발표 및 우수과제 선정·포상	외국인정책과
11. 8.	■ 사회통합 · 조기적응프로그램 민간운영기관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11. 8.(금) ~ 21.(목) • 모집 규모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350여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310여개 기관	이 민 통합과
11. 11.	■ 제3차 한-인도네시아 영사협의회 참석 • 비자 간소화, 계절근로자 취업 기회 확대 및 국내 어선원 보호 방안 등 협의	체 류 관리과
11. 18. ~ 11. 28.	■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출입국 지원 및 안전대책 시행 • 시행관서 : 김해공항(공군기지·국제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 내용 : 아세안 정상 및 대표단 대리수속 등 출입국 지원, 대테러상황본부 및 출입국안전대책반 운영, 출입국심사 강화 등	출입국심사과
11. 18.	■ 제203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1인 미디어 시대, 이주여성의 미디어를 통한 목소리 내기	외국인정책과
11. 20.	■ 귀화자 20만명 기념 국적증서수여식 개최 • 일자, 장소 : 11. 20.(수) 11:00~12: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차관, 외국인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및 우수인재, 독립유공자 후손 등 귀화자 15명	국적과
11. 21. ~ 11. 22.	■ 2019년 난민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 기간, 장소 : 11. 21(목)~22.(금), 오션스위츠 제주호텔 • 참석 : 국적통합단장, 난민과장, 전국 난민업무 담당자 등 75명	난민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22.	■ 이민정책연구원 10주년 기념행사 • 기간, 장소 : 11. 22(금),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 참석 : 법무부차관, 이민정책연구원장 등 • 내용 : 이민정책연구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적 이민정책 모색	외국인정책과
11. 25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행사 시범 실시 • 일자, 장소 : 11. 26.~27., 국적업무 수행 15개 출입국·외국인관서 • 내용 :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축하메시지, 행사 후 만족도 설문조사	국적과
11. 25. ~ 11. 29.	■ 신규채용 난민전문임기제공무원 난민실무 교육 실시 • 기간, 장소 : 11. 25.(월)~29.(금), 한국이민재단 강의실 • 대상 : 신규채용 난민전문임기제공무원 6명 • 내용 : 난민업무 전반에 대한 기초 업무 지식 함양, 난민심사 전문성 향상 등	난민과
11. 26.	■ 2019년 12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12. 2. ~ 12. 27.(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실시	이 민 조사과
11. 29.	■ '19년 제4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11. 20.(수) 15:00, 인권국 회의실 • 참석 : 외국인본부장(위원),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11명 • 안건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국적과

12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3.	■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 • 기간, 장소 : 12. 3(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 주관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법무부 공동 주관 • 내용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	외국인정책과
12. 6.	■ 제28차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참석 • 정부 3년차 재외동포 정책 추진성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등 협의	체 류 관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6. ~ 12. 7.	■ 국적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기간, 장소 : 12. 6.(금)~7.(토), 여수 베네치아 호텔 • 참석 : 국적·통합정책단장, 국적과장, 본부 및 소속기관 국적업무 담당자 총 31명 • 내용 : 국적 관련 현안 및 추진 중인 정책 공유,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안 청취 등	국적과
12. 6.	■ '19년 제6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12. 6.(금) 14: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과
12. 9.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 내용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대상자 구체적 명시 및 이용제한 대상자 규정 추가 신설 등	난민과
12. 10.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 알림 • (재입국 기회 부여) '20. 6. 30.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090) 단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기간 준수 출국 시 90일 단기방문 1년 복수비자 발급 • (신규유입 억제) '20. 3. 1. 이후 단속되거나 '20. 7. 1. 이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 •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19. 12. 11. ~ '20. 3. 31.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진신고제도 운영, '19. 12. 11. ~ '20. 1. 15.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운영 등	이 민 조사과
12. 11.	■ 한-중국 출입국관리 고위급회담 개최 • 주요내용 - 출입국 기관 간 MOU체결 구체화, 우리 공무원의 중국 입국 시 지문수집면제 등	출입국 기획과
12. 11.	■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정책현장방문 • 일시, 장소 : 12. 11.(수) 14:00, 한누리학교(인천), 군서초등학교(시흥) • 내용 : 외국인주민 자녀 전출입 현황, 학습 현장 시찰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	이 민 통합과
12. 16.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박람회 개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국내 지자체와 외국공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장 마련	체 류 관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16.	■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방안(보호기간 연장 심사의 실질화)시달 • 보호기간 연장시 단계별 승인절차 강화 • 보호소장 의견 수렴절차 강화 • 보호일시해제의 적정운영 방안	이 민 조사과
12. 18.	■ 제204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귀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	외국인 정책과
12. 19.	■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개최 • 일시, 장소 : 12. 18.(수) 14:00~14:3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차관, 외국인본부장, 대변인 및 모범귀화자 4명 • 내용 :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귀화자 4명을 선정하여 기념패 수여 및 출입국우대카드 증정	국적과
12. 20.	■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 실시 • 일시, 장소 : 12. 20.(금), 13:00~18:00, 서울외국인청 대회의실 • 참석 : 난민전문통역인 50명 • 내용 : 통역인 검증 및 보수교육 등 교육과정 의견수렴, 통역이론 및 통역기술, 난민통역 기법 등	난민과
12. 31.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및 시행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근거 등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대통령령 제30278호) 및 시행	난민과

CHAPTER 4

법령·예규 정비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9 Annual Report

제1절 법령 개정

제2절 훈령 · 예규 정비

제1절

법령 개정

제1항 법률

1 출입국관리법

가. 추진배경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고,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체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며,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재외공관 문서업무 및 공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18. 4. 10. (박경미 국회의원), 7. 12.(금태섭 국회의원), 9. 3.(신경미 국회의원) 제안
- 2019. 4. 5. 국회의결
- 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공포

● 2019. 4. 23. 시행(일부 10. 24. 시행)

다. 주요내용

●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4. 23. 시행)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할 때 관계 기관에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과태료 체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4. 23. 시행)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함.(10. 24. 시행)

제2항 대통령령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단수여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인 날인을 대신하여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심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취업하려는 직종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로 공포 · 시행

다. 주요내용

- 단수여권 소지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불가능하던 것을 여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가사 도우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전에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단기취업(C-4) 대상자로 추가하고, 자연과학 연구에 한정되었던 연구(E-3) 자격 활동범위를 사회과학 · 인문학 · 예체능 분야의 연구까지 확대함.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로이 방문하고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19. 7. 2. 대통령령 제29936호로 공포 · 시행

다. 주요내용

- 출생에 의한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세대와 상관없이 모든 동포로 확대함.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범죄 수사와 관련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국민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관리를 위하여 방문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 · 어업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한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영주자격 부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인 범죄 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정지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하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로 각각 연장함.
-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자격을 장기체류자격으로 신설함.
-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자녀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4 난민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에 불복하거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즉시 난민신청자 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신청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 이용 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19. 7. 22.~ 9. 2. 입법예고
- 2019. 12. 24. 국무회의 통과
-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78호로 공포
- 2019. 12. 31. 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발급 근거 마련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불회부결정통지서 발급 권한을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근거 마련
  -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 난민지원시설 운영 권한의 위임
  -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난민지원시설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제3항 법무부령

1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기동조끼에 무전기 및 소형 촬영장비 등을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주머니를 달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근무복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19. 2. 1. 법무부령 제94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기동조끼에 무전기 및 액션캠 등을 부착하기 쉽도록 별도의 주머니 마련
- 업무수행 중 장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머니 위치를 조정하고, 소지품 분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정 장치를 추가하는 등 기능 개선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끼 뒷면에 반사띠 추가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형식적인 절차로 남아있던 상륙허가서 회수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국심사증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19. 6. 11. 법무부령 제95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증 발급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하도록 함.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이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자화 대상이 되는 서류의 종류 및 위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여권이 없더라도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면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발급 거부처분 시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계절근로(E-8) 자격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19. 12. 24. 법무부령 제96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재외공관의 장 등이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 거부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방문하여 요청하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함.
- 사증발급 신청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전자화 대상 서류로 정함.
- 전자화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3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전자화업무 위탁 대상기관의 요건을 정함.
- 계절근로(E-8)의 체류기간을 5개월로 정하고, 체류자격 신청 시 고용계약서, 건강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계절근로자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절근로 자격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4 난민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난민인정 심사를 신청한 사람 중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난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서식을 신설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난민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의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접수하던 것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접수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19. 12. 31. 법무부령 제96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이의신청 접수증 서식 신설
- 열람·복사 대장 신설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이의신청 접수증 서식 신설
- 열람·복사 대장 신설

-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대장 삭제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확대
- 의료 지원 절차 및 신청서 서식 신설
- 기존 별지 서식 개정

제2절

훈령·예규 정비

제1항 훈령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고
1201	2. 1.	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지침	•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관리 기준에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 추가	이 민 정보과
1203	2. 13.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 심사지침	•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 및 출입국심사 절차 개선, 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기간 연장규정 신설, 기타 지침 적용범위 정비 등	출입국 심사과
1215	4. 1.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실시	이 민 정보과
1217	4. 15.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후보자 추천 시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규정 마련	이 민 통합과
1230	5. 28.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 검수관의 검수업무 대행 금지 예외규정 신설	이 민 조사과
1239	7. 19.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 재검토기한 수정(2019.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체 류 관리과
1240	7. 22.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훈령	• 연수생 요건에 한국어 능력 추가 • 연수기간 예외 연장 허용기간 확대	체 류 관리과
1242	8. 23.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 수시 소독 실시 사유 구체화 • 감염병 보호외국인 사용 물품 소각 외의 조치 신설 • 격리보호 중인 보호외국인 최소한의 실외운동 보장	이 민 조사과
1243	8. 23.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입국사범 단속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인권 교육 및 단속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이 민 조사과

번호	일 자	제 목	주 요 골 자	비 고
1243	8. 23.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사고 예방 노력 추가,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강화 등	이 민 조사과
1252	10. 1.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	•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 선발방식이 보다 체계적인 숙련기능 점수제(E-7-4) 체류자격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존 훈령을 폐지함	체 류 관리과
1270	12. 6.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운영규정	• 이용대상자에 대한 규정 명확화, 센터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 마련	난민과
1271	12. 11.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 조리식품 1인분의 보관기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	이 민 조사과
1273	12. 12.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 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관련 중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해석상 혼란방지 등 지침의 명확화	이 민 정보과

제2항 예규

번호	일자	제목	주요골자	비고
1218	4. 16.	국적업무처리지침	• 국적증서 수여제도 도입 등 개정 국적법 시행에 따른 정비 - 국적증서의 명칭·종류에 관한 규정 신설 - 귀화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 방법 변경 • 사할린동포 자녀 등에 대한 국적취득 요건 완화 - 종합평가 면제 대상, 면접심사 면제 대상 규정	국적과
1241	11. 29.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 변경된 출입국기관 명칭 반영 • 직제 상 보호과가 없거나 상황실(감시실)이 없는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보완	이 민 조사과

제3항 주요지시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1. 15.	2019년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관련 자체 행사계획 수립 지시	• 2019. 5. 20. 제12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체 행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1. 21.	단기체류자격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시달	• 국내 빈번 출입을 통한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관광(C-3-9) 복수비자의 체류기간을 90일 이내로 부여하도록 지시	기, 외교부,	체 류 관리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2. 8.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연임 희망여부 파악 지시	• 외국인 법률상담 지원 중인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위촉기간 만료로 연임희망자 파악	기	이 민 통합과
2.13.	법무부-경찰청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2. 18. ~ 3. 15.(4주) 광역단속팀 설치 출입국·외국인 관서 주관으로 합동단속반 편성, 주당 2회 경찰과 합동단속 실시	기	이 민 조사과
2. 15.	'19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 알림	• '19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도입절차, 배정심사 일정 등 제반 계획을 마련한 프로그램 전국 지자체 등 배포	기, 농림부, 해수부, 각 지자체	체 류 관리과
2. 20.	특정활동(E-7)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 고소득 우수인재 등에 대한 요건 완화 및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등을 직종별로 임금요건을 차등 적용하여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	기	체 류 관리과
3. 6.	테러대비태세 강조 지시	• 국제테러분자 등 위험인물 입국차단을 위한 입국심사 및 정첩보 수집 강화, 상황관리체계 등 강조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3. 13.	'19년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안) 시달	• '19. 3. 18. ~ 4. 12.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	기	이 민 조사과
3. 20.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지침 개정 시달	•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 기준 중 초청인이 최근 5년 내 초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면제 대상에 '폭행 등 초청인 귀책사유 없이 전(前) 배우자 사망한 경우' 추가	기	이 민 통합과
3. 22.	2019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출입국심사 지원 방안 시달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입국편의 제공 및 출입국안전대책반 운영 등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대회 조직위	출입국 심사과
3. 25.	「무사증 입국허가 통합지침」 개정	• 국내 입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심사절차 개선 [승무원 상륙허가 방식→무사증 입국허가(B-2-3)] 반영 등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3. 26.	2019년 4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4. 1.~ 4. 26.(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실시	기	이 민 조사과
4. 8.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지시	• 4.6. 강원도 산불 지역(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됨에 따라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4호에 의거 피해 지원금을 받고있는 사람이 간이귀화나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	기	국적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4. 23.	비전문취업(E-9) 체류민원 관할 완화 방안 알림	•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기존 체류지 또는 근무처 기준 관할 뿐 아니라 고용센터 인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관할 완화 개선	기	체 류 관리과
5. 14.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 집중단속 실시(안) 시달	• '19. 5. 20.~ 6. 14. (4주)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 집중단속 실시	기	이 민 조사과
5. 16.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조치에 따른 단기방문 지침 개정	• 중국 내 소득이 높은 쑤저우 등 9개 도시 호구 소지자에게 단기 복수사증(C-3-91) 발급	기, 외교부	체 류 관리과
5. 21.	2019년 6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6. 3.~ 6. 28.(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실시	기	이 민 조사과
5. 3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지시사항 알림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자 처벌 강화 및 공항만 법무부 자체 홍보 실시 등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6. 5.	「관광상륙허가제 시행지침」 개정	• QR코드를 탑재한 관광상륙허가서 발급 등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 절차 개선 반영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6. 10.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 불법체류다발국의 단기체류 외국인은 유학생 자격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 시행	기, 외교부	체 류 관리과
6. 13.	201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연수회 참여희망자 파악 지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회 참여 수요 파악	기	이 민 통합과
6. 25.	단기방문 외국인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 확대 관련 업무 지시(협조)	• 외국인 관광객 등 단기방문 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국심사대 이용 확대 관련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7. 1.	출입국심사 철저 및 직무교육 강화 지시	• 본인여부, 출입국규제자 여부, 위변조여권 행사 여부 등 확인 철저, 심사관 직무교육 내실화, 직무 해태 시 엄중조치 등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7. 22.	2019년 8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8. 5.~ 8. 30.(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실시	기	이 민 조사과
7. 30.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추천 등 지시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임기 만료 예정에 따른 신규위원 및 임기만료자에 대한 재위촉 추천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8. 1.	'건강보험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전국 확대 시행	• 7. 2.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실시한 '건강보험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 제한'을 전국 38개 출입국기관으로 확대 실시	기	체 류 관리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9. 2.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교육 전면실시 관련 지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등 우수 이민자가 멘토가 되어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멘토과정을 전국 15개 출입국·외국인관서별 실시	기	이 민 통합과
9. 6.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휴강 검토 지시	•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우려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휴강 여부 검토 및 휴강결정 시 신속한 통보와 시설물 안전대책 등 마련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9. 25.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통합·조기적응 프로그램 수업 관련 지시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일시 이동 중지명령 발령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의 교육참여 관련 안내 등 조치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9. 30.	2019년 10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10. 7. ~ 11. 1.(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실시	기	이 민 조사과
10. 17.	출입국심사 특이동향 분석 강화 지시	• 공항만별 통상 범위를 벗어난 특이동향 확인 철저, 불법체류 다발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목적 확인 철저, 선별적 집중심사 강화 등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10. 22.	호텔·유흥(E-6-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개선	• 호텔·유흥 송사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신매매 피해식별 지표 제출의무 부과 및 의료보험 가입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지침 시행	기	체 류 관리과
10. 30.	한국전 참전용사 및 참전국 국민 우수인재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 특례방안 마련	• 6.25 참전국 참전용사 및 참전국 우수인재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 특례 및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을 개선 내용의 지침 시달	기	체 류 관리과
11. 7.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심사 지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 및 신규지정을 위한 절차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11. 11.	결혼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준비 및 운영 철저	• '19.10월 이후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등에 따른 교육수요 반영을 위한 교재확보 및 기타 준비사항 철저 확인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11. 19.	2019 한-아세안, 한-메콩 특별정상회의 등의 출입국 지원 및 안전대책 시달	• 2019 한-아세안, 한-메콩 특별정상회의 출입국 편의제공 및 출입국안전대책반 편성 등 알림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11. 22.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에 관한 통합지침	• 자동출입국심사 관련 별도 관리하던 지침을 통합하고, 승무원 자동심사 간소화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등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11. 26.	2019년 12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12. 2. ~ 12. 27.(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 (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실시	기	이 민 조사과
12.10.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 알림	• (재입국 기회 부여)'20. 6. 30.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090) 단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기간 준수 출국 시 90일 단기방문 1년 복수비자 발급) • (신규유입 억제)'20. 3. 1. 이후 단속되거나 '20. 7. 1. 이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 •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19. 12. 11. ~ '20. 3. 31.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진신고제도 운영, '19. 12. 11. ~ '20. 1. 15.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운영 등	기	이 민 조사과
12. 17.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확대 시행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11개국 국민 중 100대 기업인, 부동산·금융재산 상당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복수사증 발급 시행	기, 외교부	체 류 관리과

CHAPTER 5

주요 통계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9 Annual Report

제1절 출입국자 현황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제4절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제1절
출입국자 현황

1 출입국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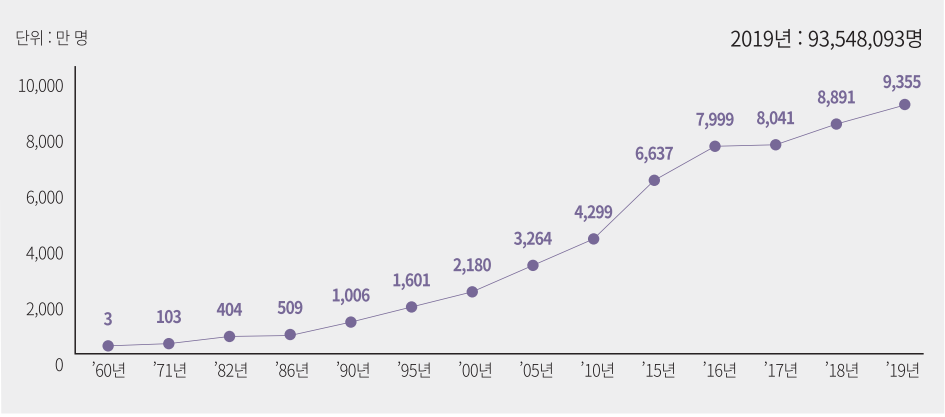

※ 1960년 출입국자 현황

(단위 : 명)

총계	입국			출국		
	소계	국 민	외국인	소계	국 민	외 국 인
33,984	18,402	9,727	8,675	15,582	7,856	7,726

■ 2019년 출입국자 총괄

(단위 : 명)

구분		출입국자	입국자	출국자
총계		93,548,093	46,770,129	46,777,964
국민	소 계	57,795,389	28,889,626	28,905,763
	승 객	54,198,298	27,086,367	27,111,931
	승무원	3,597,091	1,803,259	1,793,832

구분		출입국자	입국자	출국자
외국인	소 계	35,752,704	17,880,503	17,872,201
	승 객	33,623,839	16,841,225	16,782,614
	승무원	2,128,865	1,039,278	1,089,587

■ 최근 10년간 출입국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국	국 민	12,807,359	13,019,134	14,065,176	15,155,660	16,372,830	19,580,398	22,659,640	26,765,503	28,945,447	28,905,763
	외국인	8,635,559	9,592,545	11,056,169	12,413,453	14,665,282	13,901,391	17,255,769	13,393,163	15,418,228	17,872,201
	소계	21,442,918	22,611,679	25,121,345	27,569,113	31,038,112	33,481,789	39,915,409	40,158,666	44,363,675	46,777,964
입국	국 민	12,778,268	13,045,329	14,071,452	15,196,643	16,349,538	19,531,418	22,654,258	26,679,527	28,914,223	28,889,626
	외국인	8,766,915	9,765,902	11,129,305	12,200,473	14,264,508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소계	21,545,183	22,811,231	25,200,757	27,397,116	30,614,046	32,891,119	40,072,565	40,249,036	44,544,745	46,770,129
출입국자 총계		42,988,101	45,422,910	50,322,102	54,966,229	61,652,158	66,372,908	79,987,974	80,407,702	88,908,420	93,548,093

2 외국인 입국 현황

■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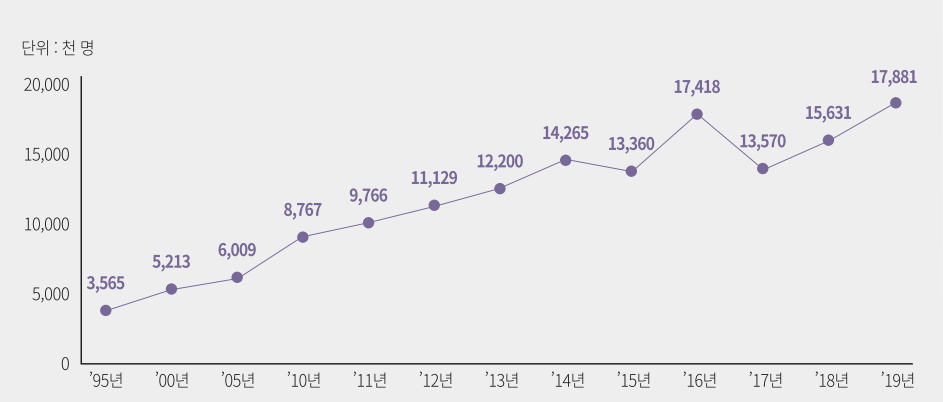

■ 외국인 입국자

(단위 : 명)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8,766,915	9,765,902	11,129,305	12,200,473	14,264,508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 주요 국가 국민 입국 현황

(2019.12.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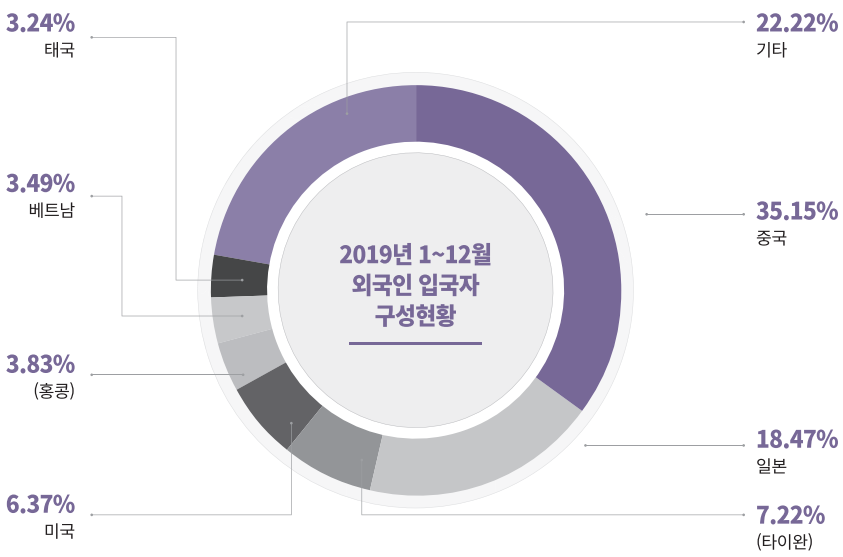

※ 전년대비 입국자 : 중국 25% 증가, 일본 11% 증가, 미국 7% 증가, 타이완 13% 증가

■ 외국인입국자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중국[1)]	6,154,730	8,268,262	4,393,936	5,032,905	6,284,486
한국계	251,916	267,130	649,225	1,046,060	1,004,319
일본	1,859,190	2,321,842	2,337,588	2,976,445	3,303,088
타이완	551,362	865,948	957,836	1,146,215	1,290,683
미국	859,361	960,683	969,277	1,068,173	1,139,150
홍콩	524,116	651,639	659,182	679,942	685,569
베트남	199,323	299,084	380,929	519,448	624,640
타이	375,021	474,262	503,777	565,784	580,191
필리핀	412,197	566,693	459,588	471,532	516,503
말레이시아	223,782	311,686	308,152	383,467	409,254
러시아(연방)	191,214	238,171	275,779	308,665	350,093
인도네시아	194,472	296,377	231,908	250,249	280,146

1) 한국계 포함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싱 가 포 르	160,402	221,844	216,574	232,359	246,736
캐 나 다	147,715	178,023	178,761	196,859	208,280
오스트레일리아	134,357	153,125	151,583	154,390	174,681
영 국	124,833	136,900	128,046	133,149	146,132
인 도	154,294	196,773	124,458	120,975	144,758
독 일	101,251	111,413	111,077	117,173	121,989
몽 골	81,201	82,780	108,139	118,783	118,977
프 랑 스	85,093	93,039	94,013	101,854	112,588
우즈베키스탄	59,453	71,299	81,711	89,391	95,634
미 얀 마	59,237	68,822	70,288	71,517	74,243
이 탈 리 아	46,449	64,268	44,435	46,987	49,815
뉴 질 랜 드	28,806	32,038	33,526	34,652	39,504
네 덜 란 드	28,691	33,674	33,954	37,461	39,496
기 타	603,151	719,662	714,992	772,147	843,867

■ 외국인입국자 체류목적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총계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14.4%
사증면제(B-1)	1,249,506	1,556,536	1,634,095	1,908,616	2,053,173	7.6%
관광통과(B-2)	4,632,594	5,833,225	5,269,825	6,378,362	7,158,538	12.2%
단기방문(C-3)	3,635,898	5,026,435	3,319,579	4,127,283	5,184,417	25.6%
단기취업(C-4)	12,218	12,920	20,617	22,618	24,507	8.4%
유 학(D-2)	140,160	169,715	212,295	248,472	291,007	17.1%
일반연수(D-4)	62,551	81,033	90,357	83,538	84,653	1.3%
상사주재(D-7)	8,991	9,160	8,548	8,460	9,072	7.2%
기업투자(D-8)	40,795	42,007	41,984	41,886	42,442	1.3%
무역경영(D-9)	33,958	26,302	18,288	9,705	8,669	-10.7%
교 수(E-1)	7,555	7,550	7,491	7,160	6,904	-3.6%
회화지도(E-2)	32,299	32,158	30,922	27,291	29,115	6.7%
연 구(E-3)	9,810	9,494	9,618	9,508	9,212	-3.1%
기술지도(E-4)	1,202	1,336	1,345	1,339	1,577	17.8%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전문직업(E-5)	2,087	2,285	2,206	2,404	2,526	5.1%
예술흥행(E-6)	4,596	3,996	3,765	4,570	5,436	18.9%
특정활동(E-7)	43,300	46,324	47,528	46,661	46,475	-0.4%
비전문취업(E-9)	123,433	134,764	140,072	145,174	151,116	4.1%
선원취업(E10)	9,431	9,877	10,720	11,737	11,634	-0.9%
방문동거(F-1)	49,310	69,742	82,857	88,747	97,159	9.5%
거 주(F-2)	35,728	43,041	48,924	53,672	58,425	8.9%
동 반(F-3)	43,222	43,684	40,048	38,402	40,284	4.9%
재외동포(F-4)	405,948	468,336	515,587	565,636	579,522	2.5%
영 주(F-5)	118,553	134,138	151,115	162,760	177,531	9.1%
결혼이민(F-6)	106,318	118,883	130,834	143,092	159,499	11.5%
방문취업(H-2)	259,484	229,300	251,674	258,067	250,655	-2.9%
기 타	2,290,754	3,306,066	1,479,215	1,235,362	1,396,955	13.1%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1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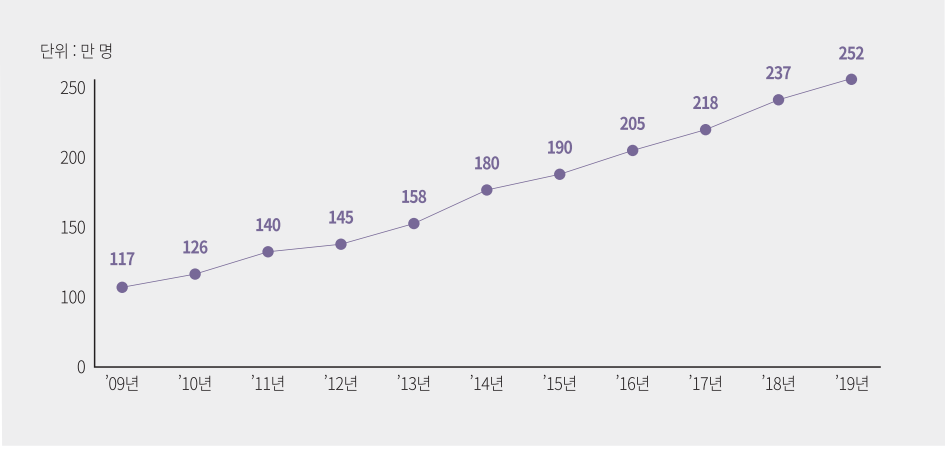

■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총계	등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18년	2,367,607	1,246,626	679,874	441,107
2019년	**2,524,656**	**1,271,807**	**792,853**	**459,996**
전년대비 증감률	6.6%	2.0%	16.6%	4.3%
구성비	100%	50.4%	31.4%	18.2%

■ 불법체류 외국인 총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총계	등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18년	전체	355,126	90,067	264,044	1,015
	16~60세	344,205	87,981	255,754	470
2019년	**전 체**	**390,281**	**95,815**	**293,150**	**1,316**
	16~60세	377,304	93,708	283,040	556
전년대비 증감률(전체)		9.9%	6.4%	11.0%	29.7%

* 거소신고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현황

■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록 외국인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단기체류 외국인	258,673	277,596	324,504	356,842	419,673	431,646	518,902	597,399	679,874	792,853
거소 신고	83,825	135,020	187,616	233,269	286,414	324,786	368,862	411,337	441,107	459,996
총계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

(2019.12.31. 현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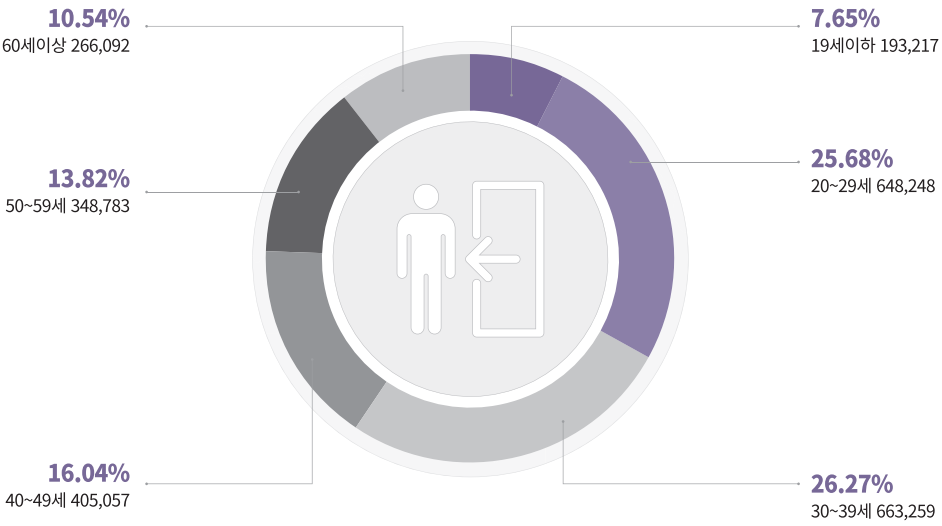

■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총계	**2,524,656**
중국[2]	1,101,782
한국계	701,098
베트남	224,518
타이	209,909
미국	156,982
일본	86,196
우즈베키스탄	75,320
필리핀	62,398
러시아(연방)	61,427
인도네시아	48,854
몽골	48,185
캄보디아	47,565
네팔	42,781
타이완	42,767
카자흐스탄	34,638
미얀마	29,294
캐나다	26,789
스리랑카	25,064
홍콩	20,018
방글라데시	18,340
오스트레일리아	15,222
말레이시아	14,790
파키스탄	13,990
인도	12,929
기타	104,898

2) 한국계 포함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2,524,656	2,134,375	390,281
사증면제(B-1)	248,753	72,509	176,244
관광통과(B-2)	204,541	174,269	30,272
단기방문(C-3)	256,696	174,973	81,723
단기취업(C-4)	1,645	1,284	361
유 학(D-2)	118,254	115,421	2,833
기술연수(D-3)	1,964	656	1,308
일반연수(D-4)	63,691	44,457	19,234
종 교(D-6)	1,561	1,519	42
상사주재(D-7)	1,400	1,384	16
기업투자(D-8)	5,909	5,748	161
무역경영(D-9)	2,352	2,317	35
교 수(E-1)	2,187	2,186	1
회화지도(E-2)	13,910	13,875	35
연 구(E-3)	3,132	3,130	2
기술지도(E-4)	220	218	2
전문직업(E-5)	624	617	7
예술흥행(E-6)	3,549	2,136	1,413
특정활동(E-7)	21,314	18,664	2,650
비전문취업(E-9)	276,755	230,633	46,122
선원취업(E-10)	17,603	11,397	6,206
방문동거(F-1)	122,886	119,852	3,034
거 주(F-2)	43,671	41,395	2,276
동 반(F-3)	22,890	22,388	502
재외동포(F-4)	464,152	462,738	1,414
영 주(F-5)	153,291	153,291	0
결혼이민(F-6)	131,034	127,684	3,350
방문취업(H-2)	226,322	224,227	2,095
기 타	114,350	105,407	8,943

2 등록외국인 현황

■ 등록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법체류자	840,372	899,613	840,421	890,286	997,607	1,058,118	1,086,436	1,088,925	1,156,559	1,175,992
불법체류자	78,545	82,848	92,562	95,637	93,924	84,969	75,241	82,837	90,067	95,815
총계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2019.12.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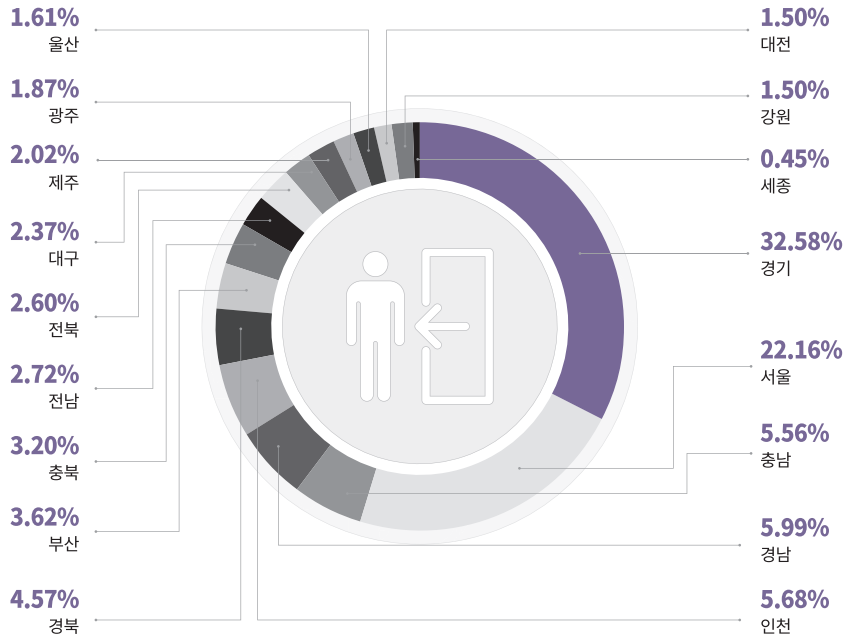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어 합계와 일치 않을 수 있음

■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충남[3)]	경남	인천	경북	부산	충북
	414,318	281,876	76,375	76,123	72,259	58,119	45,999	40,714
1,271,807	전남	전북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대전	강원
	34,638	33,074	30,191	25,668	23,825	20,450	19,109	19,069

3) 세종특별자치시 5,700명 포함

■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등록외국인
총계	1,271,807
중 국[4]	540,606
한국계	332,525
베 트 남	187,334
우즈베키스탄	56,237
필 리 핀	45,354
캄 보 디 아	45,016
네 팔	40,933
인 도 네 시 아	37,043
타 이	32,633
미 얀 마	27,483
미 국	26,025
몽 골	24,845
일 본	24,316
스 리 랑 카	23,476
타 이 완	19,872
카 자 흐 스 탄	17,499
방 글 라 데 시	14,975
러시아(연방)	14,146
파 키 스 탄	11,523
인 도	10,090
키 르 기 즈	4,982
영 국	4,384
캐 나 다	4,358
말 레 이 시 아	4,249
기 타	54,428

4) 한국계 포함

■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등록외국인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1,271,807	1,175,992	95,815
문화예술(D-1)	59	57	2
유학(D-2)	117,415	114,703	2,712
일반연수(D-4)	59,526	41,277	18,249
취재(D-5)	89	89	0
종교(D-6)	1,523	1,490	33
상사주재(D-7)	1,375	1,362	13
기업투자(D-8)	5,875	5,720	155
무역경영(D-9)	2,320	2,285	35
교수(E-1)	2,183	2,182	1
회화지도(E-2)	13,798	13,767	31
연구(E-3)	3,109	3,107	2
기술지도(E-4)	219	217	2
전문직업(E-5)	606	599	7
예술흥행(E-6)	3,231	1,957	1,274
특정활동(E-7)	20,997	18,488	2,509
비전문취업(E-9)	270,751	225,919	44,832
선원취업(E-10)	17,131	11,323	5,808
방문동거(F-1)	120,962	118,006	2,956
거주(F-2)	43,403	41,127	2,276
동반(F-3)	22,414	21,957	457
영주(F-5)	153,038	153,038	0
결혼이민(F-6)	129,200	126,283	2,917
관광취업(H-1)	2,948	2,944	4
방문취업(H-2)	223,513	221,570	1,943
기타	56,122	46,525	9,597

3 단기체류외국인 현황

■ 단기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법체류자	169,435	193,242	240,791	270,906	306,885	303,561	386,113	430,259	415,830	499,703
불법체류자	89,238	84,354	83,713	85,936	112,788	128,085	132,789	167,140	264,044	293,150
총계	258,673	277,596	324,504	356,842	419,673	431,646	518,902	597,399	679,874	792,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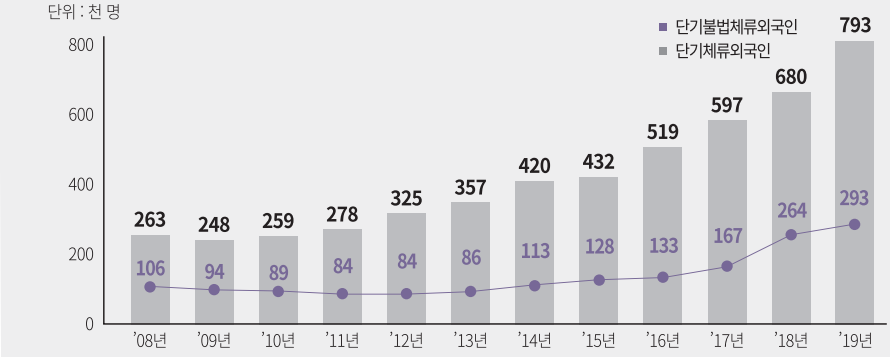

■ 단기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전체
총계	792,853
중국[5]	217,290
한국계	24,687
타이	177,271
미국	86,398
일본	61,073
베트남	37,184
몽골	23,340

5) 한국계 포함

구분	전체
타 이 완	22,817
러 시 아	21,091
홍 콩	18,073
필 리 핀	17,033
카 자 흐 스 탄	11,954
인 도 네 시 아	11,612
말 레 이 시 아	10,538
오스트레일리아	8,875
우 즈 베 키 스 탄	7,402
싱 가 포 르	7,252
캐 나 다	6,655
방 글 라 데 시	3,365
인 도	2,839
캄 보 디 아	2,543
파 키 스 탄	2,467
영 국	2,401
뉴 질 랜 드	2,210
기 타	31,170

4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 불법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율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록외국인	78,545	82,848	92,562	95,637	93,924	84,969	75,241	82,837	90,067	95,815
단기체류 외국인	89,238	84,354	83,713	85,936	112,788	128,085	132,789	167,140	264,044	293,150
거소신고	732	578	1,579	1,533	2,066	1,114	941	1,064	1,015	1,316
총계	168,515	167,780	177,854	183,106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390,281
불법체류율(%)	**13.4**	**12.0**	**12.3**	**11.6**	**11.6**	**11.3**	**10.2**	**11.5**	**15.0**	**15.5**

* 불법체류율 : 총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외국인 비율

■ 불법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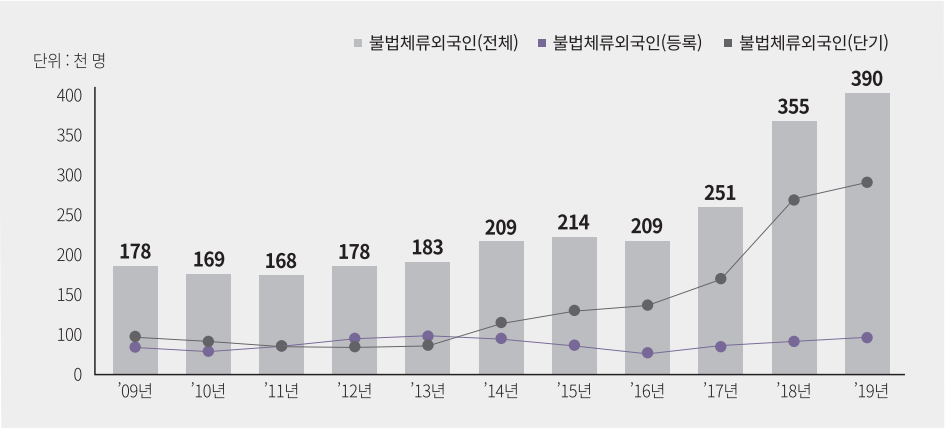

5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체류자	567,261	46,581	520,680
합법체류	508,367	42,110	466,257
불법체류	58,894	4,471	54,423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567,261	508,367	58,894
전문인력	소계	46,581	42,110	4,471
	단기취업(C-4)	1,645	1,284	361
	교 수(E-1)	2,187	2,186	1
	회회지도(E-2)	13,910	13,875	35
	연 구(E-3)	3,132	3,130	2
	기술지도(E-4)	220	218	2
	전문직업(E-5)	624	617	7
	예술흥행(E-6)	3,549	2,136	1,413
	특정활동(E-7)	21,314	18,664	2,650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단순 기능인력	**소계**	**520,680**	**466,257**	**54,423**
	비전문취업(E-9)	276,755	230,633	46,122
	선원취업(E-10)	17,603	11,397	6,206
	방문취업(H-2)	226,322	224,227	2,095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총계	**567,261**
중국[6]	212,245
한국계	195,444
베트남	47,589
캄보디아	38,067
네팔	36,160
인도네시아	34,680
우즈베키스탄	34,482
필리핀	28,295
미얀마	26,132
타이	25,969
스리랑카	22,236
방글라데시	10,705
미국	9,689
카자흐스탄	7,870
몽골	6,263
파키스탄	3,645
키르기즈	2,672
인도	2,427
티모르 민주공화국	2,303
영국	2,185
캐나다	2,058

6) 한국계 포함

구분	총체류자
우 크 라 이 나	2,032
남아프리카공화국	1,911
기 타	7,646

■ 비전문취업(E-9) 업종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276,755	230,633	46,122
소계	270,717	230,514	40,203
제 조 업(E-9-1)	211,762	186,679	25,083
건 설 업(E-9-2)	11,218	8,396	2,822
농 업(E-9-3)	32,289	25,274	7,015
어 업(E-9-4)	15,144	9,987	5,157
서비스업(E-9-5)	304	178	126
기 타 [7]	6,038	119	5,919

■ 비전문취업(E-9) 국적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국적	총체류자
총계	276,755
캄 보 디 아	37,980
베 트 남	36,621
네 팔	35,353
인 도 네 시 아	28,463
필 리 핀	25,566
타 이	25,402
미 얀 마	25,311
스 리 랑 카	21,992
우즈베키스탄	13,909
방 글 라 데 시	10,260
몽 골	5,875

7) 기타 : 관광호텔(E-9-7), 과거추천연수(E-9-95) ~ 과거합법조치(E-9-98)

국적	총체류자
파 키 스 탄	3,231
중 국[8]	2,280
한국계	611
기 타	4,512

■ 방문취업자(H-2)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연고 방취 (H-2-1)	유학 방취 (H-2-2)	자진 방취 (H-2-3)	연수 방취 (H-2-4)	추첨 방취 (H-2-5)	변경 방취 (H-2-6)	만기 방취 (H-2-7)	기타 방취 (H-2-99)
총계	226,322	621	2	246	12	19,817	36,445	168,532	647
중 국	194,826	608	2	246	10	1,424	36,430	155,556	550
우즈베키스탄	20,281	9	0	0	1	9,641	8	10,552	70
카자흐스탄	7,762	0	0	0	1	6,307	5	1,430	19
키르기즈	1,511	0	0	0	0	1,211	0	295	5
기 타	1,942	4	0	0	0	1,234	2	699	3

■ 방문취업자(H-2) 유형별 분포

(2019.12.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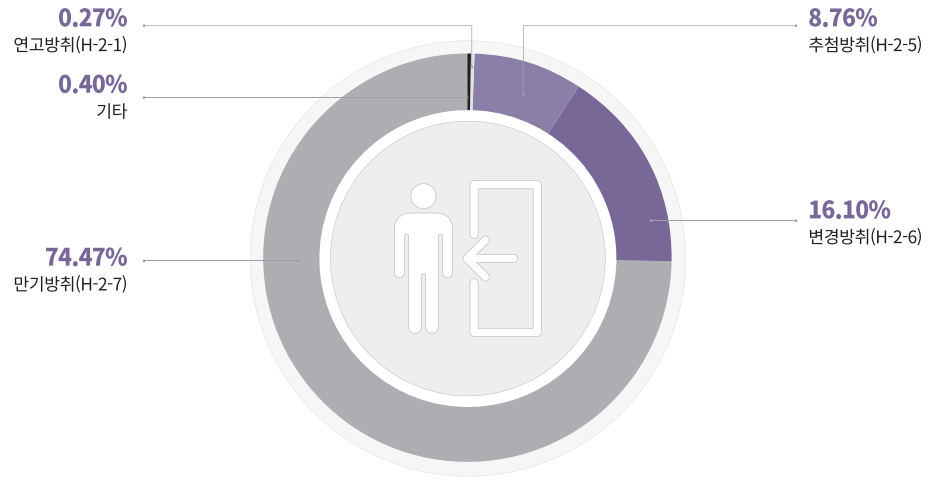

8) 한국계 포함

6 결혼이민자[9] 체류 현황

■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150,994	151,608	152,374	155,457	159,206	166,025
전년대비 증감률	0.1%	0.4%	0.5%	2.0%	2.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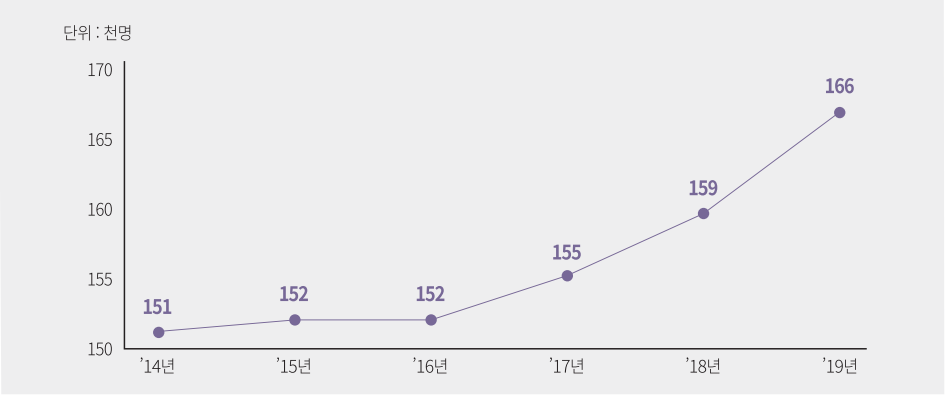

■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등록외국인)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인천	경남	충남[10]	경북	부산	전남
	48,227	28,100	10,977	10,670	9,618	8,094	7,455	6,713
164,059	전북	대구	충북	강원	광주	울산	대전	제주
	6,019	5,628	5,426	3,800	3,656	3,476	3,459	2,741

*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있어 총 체류 결혼이민자 수(166,025명)와 총계 불일치

■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국적 / 구분	계	중국[11]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미국	기타
전체	166,025	60,324	22,680	44,172	14,184	12,030	4,641	5,130	3,883	21,661
남자	28,931	13,539	8,056	2,742	1,235	463	369	99	2,801	7,683
여자	137,094	46,785	14,624	41,430	12,949	11,567	4,272	5,031	1,082	13,978

* 여성 82.6%, 남성 17.4%. * 중국 36.3%, 베트남 26.6%, 일본 8.5%, 필리핀 7.2% 순임.

9)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 2009년 이전(F-1-3, F-2-1), 2010년 이후(F-2-1, F-5-2), 2011년 12월 이후(F-2-1, F-5-2, F-6)
10) 세종특별자치시 799명 포함
11) 한국계 포함

7 외국인 유학생[12] 체류 현황

■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87,480	88,468	84,711	81,847	86,410	96,357	115,927	135,087	160,671	180,131
유학(D-2)	69,600	68,039	64,030	60,466	61,257	66,334	76,040	86,875	102,690	118,254
한국어연수(D-4-1)	17,880	20,429	20,681	21,381	25,138	30,017	39,873	48,208	57,971	61,867
외국어연수(D-4-7)	-	-	-	-	15	6	14	4	10	10
전년대비 증감률	8.0	1.1	-4.2	-3.4	5.6	11.5	20.3	16.5	18.9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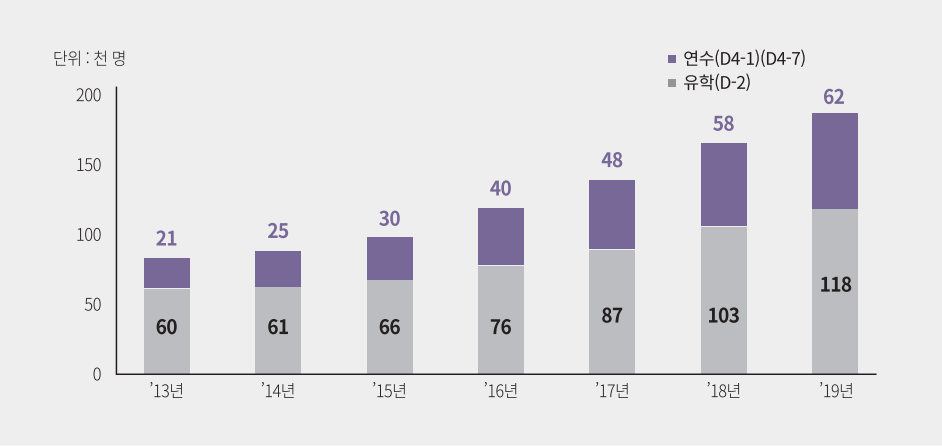

■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 계	유학(D-2)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총계	180,131	118,254	61,867	10
중 국[13]	71,719	61,264	10,455	0
한국계	1,341	1,149	192	0
베 트 남	57,539	18,337	39,196	6
몽 골	8,739	5,744	2,995	0
우즈베키스탄	10,499	7,026	3,473	0
일 본	2,887	1,929	958	0

12) 외국인 유학생 (D-2, D-4-1, D-4-7)
13) 한국계 포함

구분	총 계	유학(D-2)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파 키 스 탄	1,905	1,852	53	0
네 팔	2,331	1,964	367	0
인 도 네 시 아	1,461	1,269	192	0
인 도	1,451	1,327	124	0
(타 이 완)	1,108	770	338	0
미 국	1,385	1,243	142	0
방 글 라 데 시	1,387	1,316	71	0
말 레 이 시 아	969	838	131	0
프 랑 스	1,152	1,034	118	0
카 자 흐 스 탄	969	807	162	0
러 시 아 (연 방)	965	571	394	0
미 얀 마	1,020	684	336	0
독 일	742	711	31	0
기 타	11,903	9,568	2,331	4

8 체류허가업무 연도별 처리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1,634,334	1,739,766	1,748,121	1,944,880	1,885,856
기 간 연 장	483,128	490,416	534,630	578,912	584,889
자 격 부 여	6,891	7,850	6,477	7,155	7,587
자 격 변 경	134,157	140,698	132,516	134,413	123,522
재 입 국	5,267	2,946	1,961	1,542	1,380
체 류 지 변 경	590,239	661,663	612,597	677,179	657,882
자 격 외 활 동	6,014	8,915	10,815	14,762	19,743
근무처변경·추가	56,860	55,833	55,501	57,437	52,434
근무장소변경·추가	36	66	49	61	55
외 국 인 등 록	278,820	292,187	298,148	337,109	294,319
거 소 신 고	65,505	71,238	68,284	58,722	49,003
등록사항변경	7,417	7,954	27,143	77,588	95,042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연도별 처리

(단위 : 명, 천 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강제퇴거		18,316	21,919	28,784	26,694	31,811	34,557
출국명령		3,776	5,564	6,183	6,282	4,770	5,852
출국권고		3,352	3,192	3,345	3,366	3,273	2,687
통고처분	건	31,236	29,272	29,380	29,838	30,395	26,106
	금액/천	32,531,430	35,037,850	38,592,080	40,094,280	49,452,520	49,564,840
고발		1,613	1,850	2,553	2,851	3,482	4,552
과태료	건	11,000	8,558	7,271	15,205	15,595	14,330
	금액/천	1,528,616	1,312,070	988,440	2,165,600	2,086,170	1,960,670
기타		44,058	54,160	74,970	62,688	87,523	87,525
총계		**113,351**	**124,515**	**152,486**	**146,924**	**176,849**	**175,609**

제4절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1 국적업무 처리 현황

■ 연도별 및 국가별 국적취득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귀화		국적회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4년	17,079	14,200	14,331	11,314	2,748	2,886
2015년	19,351	13,534	16,721	10,924	2,630	2,610
2016년	19,700	12,411	17,045	10,108	2,655	2,303
2017년	20,244	12,861	17,765	10,086	2,479	2,775
2018년	25,014	14,254	22,153	11,556	2,861	2,698
2019년	**19,952**	**12,357**	**16,852**	**9,914**	**3,100**	**2,443**

국가	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귀화	11,314	10,924	10,108	10,086	11,556	9,914
	회복	2,886	2,610	2,303	2,775	2,698	2,443
중국	귀화	6,650	6,477	5,126	4,781	4,838	4,371
	회복	402	193	113	245	144	181
베트남	귀화	2,977	2,722	3,289	3,743	4,849	3,867
	회복	67	47	56	57	45	39
필리핀	귀화	392	280	337	359	597	423
	회복	8	6	3	7	7	11
몽골	귀화	120	101	107	93	99	102
	회복	13	10	7	17	14	6
우즈베키스탄	귀화	80	81	62	48	72	78
	회복	16	28	19	27	12	6

국가	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 본	귀화	30	44	35	29	17	14
	회복	52	49	31	38	53	41
타 이	귀화	71	45	41	52	58	52
	회복	13	5	5	4	5	3
파키스탄	귀화	39	24	33	51	42	48
	회복	1	0	0	0	2	0
기 타	귀화	955	1,150	1,078	930	984	959
	회복	2,314	2,272	2,069	2,380	2,416	2,156

■ 연도별 및 국가별 국적이탈 · 상실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상실	이탈
2014년	19,472	18,150	1,322
2015년	17,529	16,595	934
2016년	36,404	35,257[14]	1,147
2017년	21,269	19,364	1,905
2018년	33,594	26,608[15]	6,986[16]
2019년	**24,539**	**22,078**	**2,461**

국가	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상실**	**18,150**	**16,595**	**35,257**	**19,364**	**26,608**	**22,078**
	이탈	**1,322**	**934**	**1,147**	**1,905**	**6,986**	**2,461**
미 국	상실	10,161	9,798	12,075	11,647	13,754	14,109
	이탈	998	717	827	1,514	5,128	1,933
캐 나 다	상실	3,204	3,482	4,336	3,041	3,342	2,807
	이탈	115	68	80	89	749	133
오스트레일리아	상실	1,172	1,205	1,553	1,556	1,911	1,804
	이탈	20	16	17	17	219	39

14) ('16년 국적상실처리 증가 이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임
15) ('18년 국적상실처리 증가 이유) 제7회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임
16) ('18년 국적이탈처리 증가 이유)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5.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한 결과임

국가	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본	상실	1,946	499	15,216	962	4,998	841
	이탈	116	88	102	193	609	256
뉴질랜드	상실	531	564	657	655	686	807
	이탈	17	11	9	17	60	14
영국	상실	281	200	293	336	366	372
	이탈	0	0	6	9	21	16
독일	상실	183	162	197	192	289	279
	이탈	3	4	3	16	36	16
기타	상실	672	685	930	975	1,262	1,059
	이탈	53	30	103	50	164	54

2 연도별 난민 인정 신청 및 심사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총계	'94~'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청	1차	64,357	5,069	1,574	2,896	5,711	7,541	9,942	16,173	15,451
	이의신청	23,748	2,202	349	1,759	3,258	5,277	3,722	3,113	4,068
심사완료	**소계**	**51,787**	**4,856**	**914**	**3,349**	**6,238**	**10,602**	**9,634**	**6,881**	**9,313**
	1차	31,852	2,901	598	2,388	4,244	6,326	5,219	4,297	5,879
	이의신청	19,935	1,955	316	961	1,994	4,276	4,415	2,584	3,434
철회	**소계**	**10,738**	**895**	**350**	**408**	**351**	**815**	**1,245**	**2,412**	**4,262**
	1차	10,183	840	327	362	278	735	1,197	2,305	4,139
	이의신청	555	55	23	46	73	80	48	107	123

3 연도별 난민 인정 신청 심사 결과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계	'94~'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심사완료*		28,600	2,646	523	1,574	2,755	5,664	5,876	3,964	5,598
난민 인정 (보호)	**소계 (보호율, %)**	**3,239 (11.3%)**	**495 (18.7)**	**63 (1.2)**	**627 (40)**	**303 (11)**	**350 (62)**	**438 (7.4)**	**652 (16.4)**	**311 (5.6)**
	인정 (인정율, %)	1,022 (3.6)	324 (12.2)	57 (10.9)	94 (6)	105 (3.8)	98 (1.7)	121 (2.1)	144 (3.6)	79 (1.4)
	인도적 체류	2,217	171	6	533	198	252	317	508	232
불인정		25,361	2,151	460	947	2,452	5,314	5,438	3,312	5,287

※ 인정취소 7건 및 철회 1건 포함(2009년 4건,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4년 1건)

* 2019. 12. 31.기준 난민인정심사 및 이의신청심의 단계를 모두 거친 최종 심사완료 건

APPENDIX

부 록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9 Annual Report

1. 체류자격 일람표
2. 사증면제협정 현황
3. 주요 행사 연설문
4.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5.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6. 주요 보도자료

01 체류자격 일람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C-4)	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12. 24.>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5.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6.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7.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취재(D-5)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9. 종교(D-6)	가.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0. 주재(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기업투자(D-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2.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 구직(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교수(E-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5.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연구(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7.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18.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9.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0.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0의2. 계절근로(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1.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2. 선원취업 (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3. 방문동거(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4.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4. 거주(F-2)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25.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6.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7.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8.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9.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사) 제조업(10~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카)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파) 생활용품 도매업(464) 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너)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9. 방문취업(H-2)	러) 무점포 소매업(479) 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 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 서) 호텔업(5510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어) 여관업(55102) 저) 한식 음식점업(5611) 처) 외국인 음식점업(5612) 커)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터)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허)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고)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로)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모)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보)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소)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오) 욕탕업(96121) 조) 산업용 세탁업(96911) 초)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코) 가구 내 고용활동(97)
30. 기타(G-1)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9. 12. 24.>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체류자격(기호)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영주(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체류자격(기호)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영주(F-5)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02 사증면제협정 현황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시아주	라 오 스	외교, 관용	90일	'09.06.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말 레 이 시 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3.09.09.	
	몽 골	외교, 관용	90일	'12.12.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단기사증 발급수수료 면제
	미 얀 마	외교·관용	90일	'11.04.0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방 글 라 데 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3.03.17.	○ 2008.7.15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선원수첩	15일		
	베 트 남	외교, 관용	90일	'99.01.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싱 가 포 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11.01.	
	아 르 메 니 아	외교, 관용	90일	'12.05.22.	
	아 랍 에 미 리 트	외교, 관용, 특별, 일반	90일	'16.09.2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오 만	외교, 관용, 특별 및 공무	90일	'15.04.11.	
	우 즈 베 키 스 탄	외교	60일	'09.06.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 란	외교, 관용	3개월	'76.12.2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 스 라 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5.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인 도	외교, 관용	90일	'05.10.03.	
	일 본	외교, 관용	90일	'98.12.0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조 지 아	외교, 관용	90일	'13.04.01.	
	중 국	외교	30일	'13.08.18.	
		관용	30일	'14.12.25.	
	카 자 흐 스 탄	외교, 관용	90일	'07.12.05.	
		일반	30일	'14.11.29.	○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180일 내 최장 60일 체류)
	키 르 키 즈	외교, 관용	30일	'11.05.19.	
	캄 보 디 아	외교, 관용	60일	'06.12.2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시아주	쿠웨이트	외교, 관용, 특별	90일	'15.06.24.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타지크스탄	외교, 관용	90일	'13.01.08.	
	태국	외교, 관용	제한 없음	'67.10.10.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일반	90일	'81.12.09.	
		선원수첩	15일		
	터키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5.03.	○ 1987. 3. 1. 양해각서 개정
	투르크메니스탄	외교,	30일	'08.12.0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파키스탄	외교, 관용	3개월	'85.06.08.	※ 2001.10.1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필리핀	외교, 관용	제한없음	'70.09.01.	○ 체류기간 59일이하의 일반상용(C-3-4), 단기방문(C-3)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요르단	외교	90일	'17.5.22.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미주	과테말라	외교, 관용, 일반	90일	'07.10.0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그레나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1.27.	
		선원수첩			
	니카라과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4.08.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도미니카공화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3.04.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도미니카연방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미주	멕시코	일반	3개월	’79.04.06.	
		외교, 관용	90일	’97.08.01.	○ 사증수수료, 연장허가수수료 면제
	바베이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84.03.1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바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88.09.04.	
		선원수첩	15일	’94.11.03.	
	베네수엘라	외교, 관용	30일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 여권에 한함)
		일반	90일	’07.12.22.	
	벨리즈	외교, 관용	90일	’07.02.08.	※ 파견국 영사관의 외교공한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볼리비아	외교, 관용	90일	’11.04.18.	
	브라질	외교, 관용	90일	’92.02.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 여권에 한함)
		일반	90일		
	세인트루시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7.06.	
		선원수첩	15일		
	세인트키츠 네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수리남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6.08.03.	○ 재입국허가 면제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미주	아이티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21.	
		선원수첩	15일		
	아르헨티나	외교, 관용	90일	'04.07.31.	
	앤티가 바부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2.29.	
		선원수첩	15일		
	에콰도르	외교	제한없음	'86.05.29.	
		관용	3개월		
	엘살바도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7.02.1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우루과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1.19. '13.01.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 여권에 한함)
	자메이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1.27.	
		선원수첩	15일		
	칠레	외교, 관용	90일	'00.07.18.	○ 재입국허가 면제 (단, C-2, D-7, D-8, D-9에 한함)
		일반	90일	'04.10.20.	
	코스타리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0.22.	
		선원수첩	15일		
	콜롬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2.2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0.15.	
		선원수첩	15일		
	파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09.	
	파라과이	외교, 관용	90일	'83.01.0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 여권에 한함)
	페루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6.12.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유럽주	그리스	외교, 관용	제한없음	'74.05.15.	
		일반	3개월	'79.02.25.	
	네덜란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노르웨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덴마크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독일	외교, 관용	제한없음	'62.01.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재입국허가 면제 : '97. 4. 14
		일반	90일	'74.01.24.	
	라트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3.06.2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러시아	외교, 관용	90일	'04.11.20.	※ 2006.12.31 관용 추가 협정
		일반	60일	'14.01.01.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루마니아	외교, 관용	90일	'96.06.0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16.03.13.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룩셈부르크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리투아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2.05.09.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리히텐슈타인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몰도바	외교, 관용	90일	'12.07.03.	
	몰타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0.23.	
	벨기에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벨라루스	외교, 관용	90일	'08.07.24.	※ 조약 제1902호
	불가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8.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00.12.16.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스웨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스위스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유럽주	스 페 인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4.08.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75.04.18.	
	슬로바키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7.1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아이슬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0.04.01.	
	아 일 랜 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9.07.12.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용	30일	'08.11.21.	
	에스토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18.	
	영 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2.19.	
	오스트리아	외교, 관용	180일	'79.06.2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우크라이나	외교, 공무	90일	'14.09.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 탈 리 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75.05.0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2003. 6. 15.)
	체 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1.0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크로아티아	외교, 관용	90일	'01.06.16.	
	포르투갈	외교, 관용, 일반	60일	'79.09.19.	○ 마카오 제외
		선원수첩	15일		
	폴 란 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2.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프 랑 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67.04.12. ('8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핀 란 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4.03.01.	○ 재입국허가 면제
	헝 가 리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4.25.	
아프리카주	가봉	외교, 관용	90일	'13.08.14.	
	라이베리아	외교, 관용	90일	'82.09.23.	○ '19.7.18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레소토	외교, 관용, 일반	60일	'71.09.05.	
	모로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09.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2000. 8. 3 추가 협정)
		선원수첩	15일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프리카주	베냉	외교, 관용	90일	'92.07.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 여권에 한함)
	알제리	외교, 관용	90일	'06.08.3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앙골라	외교, 관용	30일	'12.05.25.	
	이집트	외교, 관용	90일	'98.06.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튀니지	외교, 관용, 일반	30일	'69.08.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재입국허가수수료 면제 ○ 30일 이상 체류시 연장수수료 면제(단, 6개월 초과 불가)
	카보베르데	외교, 관용	90일	'15.10.14.	
	모잠비크	외교, 관용	90일	'17.02.16.	
	탄자니아	외교, 관용	90일	'18.10.05.	
대양주	뉴질랜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94.09.3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뉴질랜드의 ISLANDS, NIUE, TOKELAU 제외
	바 누 아 트	외교, 관용	90일	'18.02.21.	

Annual Report

2019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2020

KOREA IMMIGRATION SERVICE

03 주요 행사 연설문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Ⅰ
오늘 새롭게 국적을 취득 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이 되시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태어난 국가와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간 이민자로서 한국에 잘 정착해 왔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Ⅱ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땅의 우리 선조들은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지혜와 강건한 의지로 당당히 맞서 일어섰으며,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 5천만 이상과 3만 불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갖춘 나라만이 자격이 되는 30-50클럽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민주화를 이루어 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국적을 취득한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 조국의 역사가 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사회를 더욱 활력 있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지원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구히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희망찬 역사를 함께 써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21.

법무부장관 박 상 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

Ⅰ

먼저, 오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님과 국가보훈처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올해는 3·1 만세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100년 전 1919. 3월 이 땅에서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운동은 조국의 독립과 자주, 세계평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쾌거였습니다.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3·1 만세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와 열강의 침탈에 시달리던 다른 국가들과 민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항일독립을 위한 투쟁은 한반도뿐 아니라 이역만리에서도 가열하게 전개되었고,

1919. 4월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국권회복과 독립투쟁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광복으로 가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선열들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만세시위의 주최자로, 민족교육자로서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의 선조입니다.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목숨 바쳐 싸우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의지에 가슴깊이 경의를 표하며,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힘들게 살아오셨을 후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 많은 것을 인내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늦게나마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에게 국적을 되찾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Ⅲ

우리 대한민국은 선대들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문화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7.

법무부장관 박 상 기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Ⅰ
출입국기관장과 해외 주재관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할 나위 없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특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먼걸음을 하신 해외주재관 여러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로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고, 앞으로 맞을 새로운 영광의 10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권상실, 분단과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높은 생활수준과 경제규모를 갖춘 강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Ⅱ
이처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불법체류자, 남용적 난민신청자의 유입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부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한편으로는 우수 인재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개선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출입국 기관장과 해외 주재관들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Ⅲ

첫째,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은 엄단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 공직복무 방향을 "적극정인 행정은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로 장려하고, 소극적인 행정은 엄중히 문책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기존 관행이나 형식에 치우친 업무 처리, 업무 해태, 민원처리 지연 등과 같은 소극행정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기관장들은 이러한 직원들의 행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장 책임하에 직원들의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한다는 원칙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재관들 또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우수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비자발급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조기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 군인,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하나되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최악의 참사가 되지 않은 것은 소방 매뉴얼을 철저히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의 하나된 노력과 사고 단계별로 잘 만들어진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 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재관들도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의 유입 방지를 위해 비자발급 업무에 보다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공직사회의 변화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만느껴질 수 있는 수준 만으로는 국민인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그간의 업무 방식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연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역량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회의 마치고, 국내외 임지에 잘 복귀하시기 바라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9.

법무부장관 박 상 기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사”

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한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정성호 국회의원님,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주한 캐나다 대사님,

그리고 각국 대사님들을 비롯한 주한외교사절 여러분과 올해의 이민자 상 등 수상의 영예를 안은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Ⅱ
「세계인의 날」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법정기념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미 240만 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2021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 2025년에는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간의 인구 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은 21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Ⅲ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과 외국인이 상호소통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민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하여 이민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외국인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외국인 간 정서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상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자를 적극 발굴, 홍보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Ⅳ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독립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계인과 함께 한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외국인이 함께 했기에 그 꿈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상호 이해와 공감을 넘어 자립과 통합을 함께 꿈꾸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국민과 외국인이 화합을 통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세계를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20.

법무부장관 박 상 기

"난민의 날 기념 포럼"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먼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포럼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포럼을 공동주최해 주신 강원대학교 난민연구센터장님 및 IOM 이민정책연구원장님! 감사합니다. 포럼 장소 제공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님,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난민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 7월 난민법을 시행한지 만 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난민관련 국내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난민업무도 질적이나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난민법 시행 초기 수 천 명에 불과하였던 난민신청자가 지난해까지 누적인원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난민심사관 증원,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심사시스템 구축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예멘 난민이슈를 계기로 난민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난민법을 폐지하고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71만 5천 명이 동의함으로써 최 단기간 내 최대 청원인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변화, 국민의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난민에 대한 새로운 정책접근과 사회적 성찰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포럼은 더욱 더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난민이슈는 참 어렵고 해결하는데도 많은 한계를 노정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난민은 인권의 문제이지만, 인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경관리, 공공의 안전, 우리사회의 미래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각 국에 그 책임분담을 촉구하고 있지만 난민위기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시리아, 예멘 등 중동지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아시아지역인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도 약 74만 명의 로힝야인들이 폭력 사태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하는 등 앞으로도 난민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분쟁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육로가 차단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비교적 난민문제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규모 예멘 난민신청 사례, 작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자가 16,000명을 넘어서고 누적 난민신청자가 5만여 명에 달해 향후 난민심사시스템과 심사이후 처우의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인 진단과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그동안 난민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법 및 제도상 한계 등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책무와 국익이 조화되는 난민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 6. 1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 규 근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 업무협약식”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 이성 구로구청장님, 윤화섭 안산시장님, 임병택 시흥시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무부가 다도협과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외국인정책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10년 전보다 80만 명이 증가한 17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6%인 78만 명 정도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자치단체 간 모임인 다도협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주목하여, 양 기관 간 외국인정책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제안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구성되는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양 기관이 만나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부 기관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협의회 회장님과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업무협약 체결이 외국인정책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22.

법무부차관 김 오 수

"주한공관원 만남의 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하늘과 청량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이 가을에 '이민정책포럼과 주한공관원 만남의 날'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안드레이 폽코프 벨라루스 대사님, 제임스 최 호주 대사님, 카토스 지아보 마타이 시에라리온 대사님, 린다 댓와일러 미국 총영사님, 잭클린 왐부이 와이구추 케냐 대리대사님, 그리고 주한공관원 여러분, 차세대 이민정책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주한 외국공관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국의 이민정책을 공관원 여러분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매년 이민정책포럼과 주한공관원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각국의 이민정책 리더들이 참가하는 제12회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회의' 일정 중에 개최하게 되어 해외 이민정책 전문가들도 함께하고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류외국인은 242만 명으로 대한민국 국민 인구의 4.6%에 이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많고도 다양한 외국인이 존재하며 우리 국민과 밀접하게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는 더 이상 국민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정책은 국민 생활과도 현실적으로 닿아 있는 정책으로서 더욱 중요해졌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에 대하여 국민들도 매우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우리의 정책고객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질서있는 외국인 체류 및 취업 관리를 위해 우리 본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 중 일부를 귀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국제이주기구의 윌리엄 스윙 전 사무총장은 '이주는 21세기 메가트렌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이주자가 10억이니, 당연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10억이라는 수치에는 국내이주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모인 우리들 중에는 스윙 총재의 이 유명한 표현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민분야에 몸담고 국제이주의 흐름과 규모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니까요.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인식과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이민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더 이상 국경관리와 외국인관리에 한정되는 부차적인 정부정책이 아니라 핵심적 국가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적 변화는, 세계적으로 초국경적 범죄, 난민신청 증가 등의 복잡한 이민현상과 결합되어, 우리 정부만의 일방적 정책만으로는 정책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 상대방 국가와의 다각적인 양자 협력, 다수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다자 협력이 동반되어야 더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주한공관원을 비롯하여 해외 이민당국과 긴밀한 협력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한공관원 및 세계 각국의 차세대 이민행정 전문가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간의 협력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민정책포럼과 주한공관원 만남의 날 행사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 규 근

“20만 번째 국적증서 수여식”

오늘 20만 번째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주신 귀화자 여러분과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오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이 되시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2011년 10만 번째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와 주신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뜻 깊은 날입니다. 1957년 첫 귀화자가 나온 이후 62년만에 20만 번째 귀화자가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귀화자 수가 2011년에 10만명을 넘어선 후 10년이 되지 않은 올 해에 2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민자들에게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나라로 선택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수 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강인한 민족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세계 11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불굴의 의지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것을 결심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귀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으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도 다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각자 태어난 나라와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 새로운 희망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오셨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다양한 경험이 우리 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우리 문화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자신과 가족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각자의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희망찬 역사를 함께 써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0.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이민정책연구원 10주년 기념행사”

이민정책연구원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영상축사를 보내주신 「안토니오 비토리노」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님, 「스테픈 캐슬」 명예교수님, 「그라지아노 바티스텔라」 前 SMC 센터장님, 「하워드 듀칸」 교수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오늘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발전을 위해 귀한 말씀을 나누어주실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2009. 12. 17.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의 협정을 바탕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이 개원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이주와 이민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10년간 300여건 이상의 연구물을 발간하고, 180여건 이상의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열정적인 활동은 이민정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학계에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연구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와 고용조사를 수행하였고,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의 아시아 공동사무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훌륭한 성과를 내어준 이민정책연구원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출범한 10년 전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은 110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상당수가 우리의 이웃, 가족, 동료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대한민국을 더욱 다채롭게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적·경제적 변화는 우리의 인식과 정책 또한 달라져야 하며, 다가오는 변화를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많은 정책적 도전과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의 비중과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국인과 이주민들이 어떻게 소통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더욱 무거운 과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맞는 이민정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로운 미래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가의 전략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걸맞는 이민정책 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을 찾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후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여러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학문적·정책적 논의를 통해 우리의 미래와 이민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국민 공감 하에 안전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보다 포용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파트너로서 이민정책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발전과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2.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에 외국인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토론회를 위해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여명에 이르는 등 글로벌 사회가 되어 외국인과 함께 상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수가 2019. 11월 기준 39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이민학회에서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조사 연구’에서, 2018. 5월 기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2만6천명인데, 이 중 15만9천명이 불법취업 하고 있다고 추산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 31만2천명의 5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건설현장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익명성으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외국인들이 쉽게 불법취업을 할 수 있어, 이로 인해 40~50대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잠식당하고 있는 건설업 분야에 대해 법무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취업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의 불법취업은 갈수록 늘어나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단계에 이르렀고, 일자리를 잃은 한국인 건설근로자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건설업 분야 불법취업 단속을 강화해 달라'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는 것이 법·제도상의 문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청업자에게 자신의 하청업자가 해당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원청업자는 하청업자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청업자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한다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의 불법취업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한정애 의원님께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건전한 외국인 체류질서유지를 위해 제안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건설현장에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보호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펼치는 데에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유익한 논의와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모범귀화자로 선정되신 네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범귀화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가족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오랫 동안 단일민족의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전통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귀화자들은 우리 사회를 더 새롭게 하고, 다양성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귀화자는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2011년에 10만 명을 넘어선 후 10년이 되지 않은 금년 11월에 2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250만 명에 이르는 등 글로벌 사회가 되어, 이민자는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자기발전을 이루고,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모범귀화자’를 2018년부터 발굴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귀화자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의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 생활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묵묵히 봉사를 하는 등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신 분들입니다.

귀화자 여러분,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어 사회에 적응하고 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고 계시는 모범귀화자 여러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모범귀화자 여러분

각자 태어난 나라와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 새로운 희망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오셨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범귀화자로 선정되신 여러분들은 한국에 온 많은 이민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도 이민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기발전을 이루고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다음 세대에게도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봉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를 살 만한 세상, 더욱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범귀화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8.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자랑스러운 출입국인상 수여식”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먼 곳에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여 출입국 기관의 위상을 드높인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우리 본부는 출입국 업무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인권보호 활동을 해오거나 평상 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선행을 하고 있는 직원과 업무관계인을 격려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출입국인상」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을 선정·포상하여 출입국 기관 내에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의 기본은 대한민국의 국경을 지키고, 법질서와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지만, 법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배려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만,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외국인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는 우리 본부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열린사회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출입국 기관에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가 잘 정착하고,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배려와 존중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 규 근

04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 일반 책자 목록

발간 시기	책자 명
2019. 6.	당신의 '대한민국'을 보여주세요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수기공모전 수상작(수기집)

■ 전문가 연구 보고서 목록(www.prism.go.kr 참조)

발간 시기	연구 보고서 명	연구자(단체)
2019. 8.	국적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연구보고서	이민정책연구원
2019. 9.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19. 10.	인도적 국경관리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10.	이민정보원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12.	외국인정책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사)한국행정학회
2019. 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과정 개편방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12.	난민법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05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19. 12. 31. 현재)

■ 본부

직 위	성 명	발령일
본 부 장	차규근	'17.9.4.
출입국정책단장	이인규	'19.10.7.
국적·통합정책단장	유복근	'18.8.20.
출입국기획과장	육승훈	'19.10.10.
출입국심사과장	안동관	'19.1.7.
체류관리과장	이진곤	'19.8.23.
이민조사과장	반재열	'19.8.22.
이민정보과장	이상달	'18.1.1.
외국인정책과장	차용호	'19.2.5.
국적과장	김현채	'19.3.18.
이민통합과장	송소영	'19.8.24.
난민과장	김정도	'18.2.28.
출입국기획과 서기관	김무진	'19.7.8.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김세진	'19.3.25.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이정미	'19.7.8.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이대우	'17.1.9.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박주현	'19.1.7.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이한태	'19.1.7.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이은경	'19.7.8.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18.6.4.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오동록	'19.10.10.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승현	'15.8.10.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종철	'16.2.22.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18.1.1.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정욱	'19.7.8.
이민조사과 사무관	강성록	'18.3.5.
이민조사과 사무관	박수완	'19.1.7.

직 위	성 명	발령일
이민조사과 사무관	홍동우	'19.1.7.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영오	'19.1.7.
이민정보과 사무관	임준식	'17.1.9.
이민정보과 사무관	윤철민	'19.1.7.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김기락	'18.2.27.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서석주	'18.7.23.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고동중	'19.3.18.
국적과 사무관	황민하	'18.1.1.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18.1.1.
국적과 사무관	소근희	'19.1.7.
이민통합과 사무관	유성오	'18.1.1.
이민통합과 사무관	권택성	'19.3.2.
이민통합과 사무관	임동규	'19.1.7.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호수	'19.7.8.
난민과 사무관	이취경	'19.7.15.
난민과 사무관	김종무	'19.3.18.
난민과 사무관	전동균	'19.7.8.
법무부 부이사관	배상업	'19.12.14.
법무연수원 사무관	류재석	'18.7.23.
법무비서관실 서기관	김태형	'19.5.8.
국가인권위 사무관	조승래	'19.1.1.
KOTRA 사무관	정금심	'18.1.1.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사무관	박상원	'19.7.22.
국무조정실 (이민정책) 사무관	최종원	'19.1.1.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무관	최문정	'18.1.1.

■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발령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청장	장세근	'18.8.6.
인천공항 지원국장	박재완	'19.8.19.
인천공항 심사1국장	류인성	'19.3.25.
인천공항 심사2국장	이기흠	'19.8.22.
인천공항 총무과장	김기영	'19.3.25.
인천공항 심사지원과장	신현민	'17.7.1.
인천공항 입국재심1과장	김형연	'18.1.1.
인천공항 입국재심2과장	이양수	'18.1.1.
인천공항 심사 1과장	최남일	'18.1.1.
인천공항 심사 2과장	윤형탁	'19.1.7.
인천공항 심사 3과장	유용재	'16.2.22.
인천공항 심사 4과장	배명한	'18.7.23.
인천공항 심사 5과장	조기수	'18.7.23.
인천공항 심사 6과장	김동근	'18.8.31.
인천공항 심사 7과장	유제경	'19.1.7.
인천공항 심사 8과장	최종원	'19.1.1.
인천공항 심사 9과장	김경희	'18.7.23.
인천공항 심사10과장	박정호	'19.7.8.
인천공항 심사11과장	이진수	'19.1.7.
인천공항 심사12과장	최인식	'18.7.23.
인천공항 심사13과장	김보경	'19.7.8.
인천공항 심사14과장	김병희	'19.10.1.
인천공항 심사15과장	김일환	'18.1.1.
인천공항 정보분석과장	이호원	'19.10.10.
인천공항 조사과장	정성경	'18.7.23.
인천공항 감식과장	김길술	'18.7.23.
인천공항 보안관리과장	박진수	'18.1.1.
인천공항 정보관리과장	신병묵	'18.1.15.
인천공항 서울역소장	공석	
인천공항 도심공항소장	신안선	'19.7.8.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청장	손홍기	'18.8.6.
서울 총무과장	강성환	'19.1.7.
서울 관리과장	이문한	'19.10.7.
서울 이민특수조사대장	윤상용	'18.7.23.
서울 정보화센터장	주양근	'18.7.1.
서울 국적과장	김용규	'19.1.7.
서울 난민과장	안호근	'19.7.8.
서울 사범과장	공석	
서울 조사과장	곽준태	'18.7.23.
서울 사무관	김용님	'19.1.7.
서울 사무관	임용성	'19.7.23.
서울 전자비자센터장	김태완	'17.6.12.
서울 정보화센터사무관	유상동	'15.8.3.
서울 정보화센터사무관	이수천	'18.8.1.
서울 세종로소장	공석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청장	안규석	'19.10.10.

직 위	성 명	발령일
부산 관리과장	공석	
부산 심사과장	윤영주	'16.2.22.
부산 조사과장	조영주	'19.1.7.
부산 이민특수조사대장	이상수	'19.10.10.
부산 사무관	조은주	'19.1.7.
부산 사무관	권선희	'19.7.8.
부산 사무관	김필호	'19.7.8.
부산 김해소장	한성근	'18.1.1.
부산 감천소장	공석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청장	이재유	'19.10.10.
인천 관리과장	박찬순	'18.7.23.
인천 심사과장	임상훈	'18.1.1.
인천 조사과장	구창모	'19.7.8.
인천 사범과장	임홍헌	'18.1.1.
인천 사무관	심미림	'19.1.7.
인천 사무관	오금택	'19.3.25.
인천 안산소장	신종현	'19.7.8.
인천 안산 사무관	유현송	'19.1.7.
인천 안산 사무관	권옥례	'19.8.24.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원청장	이동휘	'18.2.1.
수원 관리과장	김진용	'19.3.25.
수원 사범과장	이상한	'19.7.8.
수원 조사과장	김홍규	'19.1.7.

직 위	성 명	발령일
수원 평택항만소장	나모수	'18.1.1.
수원 평택소장	이달세	'18.1.1.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청장	최영길	'19.10.10.
제주 관리과장	강영우	'18.1.1.
제주 심사과장	신상원	'18.7.23.
제주 조사과장	서영군	'19.1.7.
제주 사무관	홍인표	'19.1.7.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남부사무소장	공석	
서울남부 관리과장	박동철	'19.7.8.
서울남부 사범과장	윤양선	'18.7.23.
서울남부 조사과장	전창엽	'18.1.1.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공항사무소장	강수근	'19.1.7.
김해공항 입국과장	김용진	'18.7.23.
김해공항 출국과장	최철수	'19.1.7.
김해공항 정보관리과장	문상봉	'17.7.24.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사무소장	구본준	'19.1.7.
대구 관리과장	이성문	'19.7.8.
대구 심사과장	최성은	'19.7.8.
대구 조사과장	신한진	'19.7.8.
대구 구미소장	김성헌	'19.1.7.
대구 포항소장	이승호	'19.1.7.

직 위	성 명	발령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사무소장	황택환	'18.1.1.
대전 관리과장	강대열	'18.7.23.
대전 조사과장	정병모	'19.7.8.
대전 천안소장	공석	
대전 천안사무관	김재석	'19.7.8.
대전 천안사무관	이명표	'19.3.25.
대전 서산소장	황선주	'19.1.7.
대전 당진소장	김호진	'19.1.7.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여수사무소장	홍혁표	'19.7.8.
여수 관리과장	임선봉	'18.7.23.
여수 사범과장	곽범현	'18.7.23.
여수 보호과장	김종오	'19.1.7.
여수 의무과장	이어진	'16.4.18.
여수 광양소장	최희주	'18.7.23.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양주사무소장	김수남	'19.1.7.
양주 관리과장	임채임	'19.8.23.
양주 사범과장	김민경	'18.1.1.
양주 조사과장	공석	
양주 고양소장	공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사무소장	이춘용	'18.1.1.
울산 관리과장	이왕훈	'18.7.23.
울산 심사과장	김성식	'19.3.25.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포공항사무소장	이덕룡	'19.7.8.
김포공항 심사과장	안숙열	'18.1.1.
김포공항 사무관	권종현	'19.7.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사무소장	김진영	'19.2.27.
광주 사무관	김재남	'18.7.23.
광주 사무관	오승석	'18.1.1.
광주 목포소장	주면식	'18.7.23.
광주 무안공항소장	서윤원	'18.1.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창원사무소장	백석현	'18.9.3.
창원 사무관	김홍수	'19.7.8.
창원 사무관	최해원	'19.10.10.
창원 거제소장	이봉규	'18.7.23.
창원 통영소장	정희정	'19.1.7.
창원 사천소장	윤양원	'19.7.8.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춘천사무소장	김진성	'19.7.8.
춘천 사무관	박홍상	'19.1.7.
춘천 동해소장	송은옥	'18.7.23.
춘천 속초소장	최규주	'19.7.8.
춘천 고성소장	최문정	'18.1.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 위	성 명	발령일
청주사무소장	고동기	’18.1.1.
청주 심사과장	배용호	’19.7.15.
청주 사무관	정왕교	’18.1.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사무소장	심준섭	’19.1.7.
전주 사무관	유심희	’18.1.1.
전주 사무관	이우진	’19.3.25.
전주 군산소장	정영부	’19.1.7.
<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보호소장	윤종석	’19.10.10.
화성보호소 관리과장	김종복	’19.1.7.
화성보호소 사범과장	김경수	’19.10.10.
화성보호소 보호과장	최종문	’19.8.18.
화성보호소 의무과장	이도형	’17.10.20.
<청주외국인보호소>		
청주보호소장	이종국	’19.7.8.
청주보호소 관리과장	김호중	’18.1.1.
청주보호소 사범과장	최성희	’19.7.8.
청주보호소 보호과장	전강섭	’19.8.24.
청주보호소 의무과장	박은실	’17.4.24.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입국지원센터장	이인숙	’19.1.28.
출입국지원센터 사무관	김준철	’19.7.8.

06 주요 보도자료

■ 2018년 보도자료 배포 일지

월 일	주 요 내 용
1. 18.	법무부·경찰청 불법체류·풍속저해를 조장하는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 - 합동단속 및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추진, 브로커 명단 본국 정부 통보
1. 18.	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귀화자 등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 취득
1. 21.	2018년도 출입국자수 사상 최고 기록 - 출입국자 9천만 명 육박, 자동출입국심사 3천만 명 돌파
1. 25.	고려인 등 재외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합니다
1. 25.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등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
2. 19.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 - 18일부터 합동단속 실시, 단속 시 안전사고도 적극 예방
2. 21.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 사진, 동영상 공모전 개최 - '당신의 대한민국을 보여 주세요!'
2. 22.	법무부, 고려인동포 밀집지역을 찾아가 고충을 듣다 - 고려인 동포 및 지원 단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2. 22.	국민 일자리 잠식에 영향이 없는 분야에 외국 우수인재 문호와 숙련 기능인력 쿼터 확대 -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
2. 26.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 허위·최재형·박찬익·권재학·오성묵·이인섭 선생 후손 등
2. 28.	국내 외국인들이 바라본 3·1 운동은 어떤 의미일까? - 법무부, 재한 외국인 대상으로 독립기념관 릴레이 탐방
2. 28.	유학생 관리 소홀 대학은 제재를 강화하고 관리 우수 대학은 혜택을 확대 합니다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3. 5.	최근 3개월 일본인 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
3. 7.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3. 8.	2019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민의 일손 부족을 돕습니다 - 상반기, 41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597명 배정
3. 13.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이번 달에 종료, 자진출국 서둘러야 - 다음 달부터는 5개 부처 합동단속 실시

월 일	주 요 내 용
3. 28.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국적동포 등 포용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합니다. - 적극적인 행정으로 수년간에 걸친 고질·반복민원 해소 - 외국인 호명에 불편을 겪던 국민들의 불편함도 해소
4. 1.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개소 11주년, 고품질 상담서비스 강화 -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서비스 품질 인증 획득, 3자통역서비스 확대
4. 14.	법무부, 관계부처와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 논의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
4. 17.	법무부, 영주권 제도 개선 추진 - 제도 시행 17주년,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검토
4. 19.	“외국인의 비자 연장, 각종 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 여권정보 간편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개선
4. 24.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 등 635명 적발 - 불법취업외국인 498명, 불법고용주 93명 포함
4. 26.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운영으로 국경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운영 14년, 전자적 국경관리 기반 강화
4. 29.	법무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에 공동 노력 - 법무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5. 1.	법무부, 외국인 투자·창업 비자 규제를 개선합니다 -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5. 10.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2019년 5월 10일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 시행 - 중국 대도시 복수비자 발급 대상 지역 확대 5. 27.부 조기 시행 - 권평오 KOTRA 사장 「우리 무역·투자 정책과제와 발전 방향」 특강
5. 10.	사회통합프로그램 10주년, 외국인 54만 명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재한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크게 기여 - 도입 10년 만에 126개국 출신 이민자 54만 여명 참여 - 생활법률·법질서외 금융 경제, 소비자 교육 등 인기과정 확대
5. 16.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기간의 입국자 일평균 전년 대비 36.2%, 58.4% 증가
5. 17.	농촌발전에 평생을 바치다...프랑스인 두봉 주교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 이민 관련 3대 학회, 최초로 공동 포럼 개최...중장기 이민정책 방향 논의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맞아 모두가 어울리는 축제의 장 열려
6. 3.	법무부, 농촌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 계절근로기간 연장등 제도 개선 추진

월 일	주 요 내 용
6. 11.	법무부,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한다 -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가사·육아·간병분야 취업 배제를 통해 안심하고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6. 20.	2018년 난민신청 및 처리 현황 - 1일 평균 64명 신청, 최대 147명 신청 - 2019년 5월까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 54,327명
6. 24.	법무부, 6·25 유엔(UN)군 참전용사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 최초 시행 - 참전용사·후손, 참전국 유학생에 대한 출입국·체류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참전국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우호 증진
6. 28.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최초로 영업정지 행정제재 받아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 집중단속」으로 621명 적발 - 국세청에 원천징수 의무 위반 불법고용 사업장 21개소, 가산세 부과 등 행정제재 요청
7. 1.	외국인관광객, 훨씬 빠르고 편하게 출국심사 받는다 - 입국 시 제공한 얼굴과 지문정보를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로 출국
7. 4.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자 유치 1,700억 원 돌파 - 금년 상반기 유치액 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3억 원 대비 81.3% 급증 - 인천공항 내「글로벌 인재 비자센터」설치를 통한 투자 전문상담원 배치와 고액 투자자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범위 확대 등 투자유치 노력
7. 10.	법무부,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 관련 간담회 개최
7. 16.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7. 22.	법무부와 지자체가 외국인정책 협업체계를 강화합니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7. 23.	한국사회 정착 노하우, 먼저 온 이민자가 알려준다 - 법무부, 방송인 줄리안 등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 멘토단 구성
7. 31.	'수사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8. 8.	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단기상용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8. 13.	최근 3개월 출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 - 일본인 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

월 일	주 요 내 용
8. 21.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마련 - 체류기간 연장시 '선허가 후조사' 및 귀책사유 입증조력제도 구축 - 가정폭력 범죄 전력자 외국인배우자 초청 제한 - 상시 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 한국인 배우자 피해 최소화
8. 29.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합니다 - 9.2.부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 의무 시행
9. 2.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 90일 이내에서 5개월 이내까지 확대하는 출입국 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9. 5.	난민심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 조사인력 충원
9. 16.	최근 3개월 출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 - 일본인 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
10. 4.	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 '사전 신고제' 시행 - 2019.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 폐지
10. 8.	중국 국경절 기간 중국인 입국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증가
10. 10.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8.21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후속조치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 14.	법무부 – 서울대, 업무협약(MOU) 체결 -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11. 18.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 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전자비자 시행, 세금 체납 업체 외국인 초청 제한
11. 20.	'귀화자 62년 만에 20만 명 돌파'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태국 출신 교수(한양대학교 영문학과) 등 15명 국적 취득
11. 25.	법무부,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 파악 및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등록사항에 취학 중인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
11. 25.	태국 노동부와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11. 27.	한-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양해각서(MOU) 체결 - 법무부,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돕는다
12. 2.	법무부 및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공동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개최합니다

월 일	주 요 내 용
12. 10.	법무부, 외국인 호텔·유흥 분야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 UN 등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예술·흥행(E-6) 비자 제도 개선
12. 10.	법무부·고용노동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 - 12. 11.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4개 분야 대책 마련
12. 16.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을 위한 주한공관-지자체 박람회 개최
12. 18.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5개월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12. 18.	법무부, 아름다운 한국인 「모범귀화자」 선정·축하 - 네팔출신의사정제한씨, 대만출신자연환경해설사왕계씨 등 4명
12. 30.	법무부 - 산업은행, 특별 자금 2,000억 조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 외자 유치 자금 등을 통한 특별 금융 상품 출시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저리로 지원

Annual Report

2019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2020

KOREA IMMIGRATION SERVICE